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이미정 · 윤덕경 ·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 **이 미 정**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본원 연구위원)

변화 순 (본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자 : 박 선 주 (본원 연구조사원)



발 간 사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투입되었고, 관련기관 종사자의 자격, 상담원 양성교육, 보수교육 에 대한 사항이 법에서 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 성폭 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과 종사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예산도 꾸 준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와 관련된 자격부여 방식은 법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폭력 피 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 격을 갖추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현재의 상담원 혹은 종사자 자격은 국가자격도 민간자격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 니다. 여성폭력 지원기관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하면서, 양성 및 보수교육과 관 련된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수준 제고와 관련하여 종사자 자격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과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종사자 자격부여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 려하여 연구진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관련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위해 자문과 평가를 기꺼이 맡아주신 자 문위원과 논평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를 맡아서 수행해 주신 연구 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 2011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

연구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상담원 혹은 종사자 자격은 현재 국가자격도 민간자격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과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현재의 종사자 자격부여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 강화를 위해 현재의 자격부여, 양성교육, 보수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를 검토한 후 자격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와 관련된 실태 파악을 위해서 2007년과 2010년 에 실시된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로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사자 자격과 관련된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의 관련지침, 상담원 양성 및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내부자료, 관련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또한 양성교육, 보수교육, 자격부여 방식에 대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8월 24일과 8월 31일 2차례에 걸쳐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9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 수준의 질 개선, 종사자 양성

교육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관련 종사자의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로 종사자 자격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 및 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분야 종사자 처우가 여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와 비교하여 열악한 이유를 여성운동에서 촉발된 해당 기관 등장의 역사적 배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논의하려고 한다. 둘째, 피해자 지원기관 및 종사자 수의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종사자의 직무 및 근로여건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려고 한다. 셋째, 해당 종사자의 직무가 소속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넷째, 현행 종사자 자격부여, 양성교육, 보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동안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 정책담당자, 연구자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된 적이 별로 없는데, 본 연구는 향후 관련 논의를 공공 토론의 장으 로 이끌어내기 위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배경

!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등장과 성장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여성단체의 주요 조직이었는데, 이들 조직은 다수의 자원봉사자와 소수의 유급 직원으로 운영되었다(이원숙, 1998). 이들은 여성폭력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였는데, 초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이큰 비중을 차지했다(신상숙, 2006).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경찰과 의료계의 관행은 이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는데, 경찰과 의료진은 피해자의 권리와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보장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충격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Loss and Harvey, 1991).

2.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선진국의 경우 여성운동 단체에 의해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여성폭력 이슈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Jung, 2002; Martin, 1990; 이원숙, 1997).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피해자 지원 과정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데 초기 운동의 성격이 약화되면서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제도화의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운동단체의 성격이 변하는데, 피해여성 지원은 관료화, 전문화, 서비스화의 경향을 띠게 된다(신상숙, 2006).

정부예산 지원에 따라 운동의 성격은 약화되었고, 여성폭력을 개인 피해자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지원금을 받는 센터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치료 모델이 도입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의료적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호주, 캐나다, 미국에 설치된 성폭력연계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ers; SARCs)가 병원이나 지역사회 센터에 설치되었는데 이들의 서비스 접근방식은 초기 여성주의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센터들에게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지만, 정부가 이들 센터들에게 바라는 바는 예방(prevention)보다는 치료(treatment)였다(Mathews, 1994; 1995).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Mathews, 1994; 1995).

3.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설립과 발전과정이 여성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데, 1980년대 초 여성의 전화는 '가부장제 이념과 제도, 남성중심적 가치관과 규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그리고 군사문화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을 '성폭력(gender violence)'으로 개념화하여 여성인권운동을 추구해나갔다(박인혜, 1998). 1991년 한국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설립되었다. 성폭력상담소는 강간, 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으며, 여성폭력을 개별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가부장제적 사회의 남녀 간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였다. 90년대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의 근

거가 마련되었으며, 1997년 11월 가정폭력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한국도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단체들 간의 경쟁, 운동성의 약화, 기관 자율성의 약화가 나타난다(김현정, 2000; 신상숙, 2007). 정부지원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은 민간의 자율성 침해, 민간기관의 목적 및 활동목표 왜곡 및 관료화 현상이고, 긍정적 측면은 물적자원 확보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여 시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소정, 2005).

Ⅲ.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급속히 증가하여 성 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2001년 32억원에서 2010 년 292억원으로 9배 가량 증가하였다. 상담소에 비해 보호시설의 정부지원 예산 증가폭이 더 컸으며, 성폭력 지원기관에 비해 가정폭력 지원기관 관련 예산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관련기관에 대한 정부예산의 증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소 수의 변화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2001년 142개소에서 2010년 249개소로 1.8배 가량 증가하였고, 지원받는 상담소 수는 동기간 46개소에서 93개소로 2배로 늘었다. 성폭력 상담소의 수는 92개소에서 160개소로 1.7배 늘었고, 지원받는 상담소는 56개소에서 87개소로 1.5배 증가하였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는 30개소에서 64개소로 증가하고, 성폭력 보호시설은 8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하였다. 보호시설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2.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평가 현황

〈표 요약-1〉2010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평가 분포

(단위: 개소, %)

| 78 | 가정폭 | 력상담소 | 성폭력 | 부상 담소 | 가정폭력 | 부호시설 | 성폭력보호시설 | | |
|------------|-----|--------|-----|--------------|------|--------|---------|--------|--|
| 구분 | 개소수 | 비율 | 개소수 | 비율 | 개소수 | 비율 | 개소수 | 비율 | |
| 35초과-40이하 | 0 | 0.00 | 1 | 1.14 | 0 | 0.00 | 0 | 0.00 | |
| 40초과-45이하 | 2 | 1.57 | 0 | 0.00 | 0 | 0.00 | 0 | 0.00 | |
| 45초과-50이하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
| 50초과-55이하 | 4 | 3.15 | 4 | 4.55 | 0 | 0.00 | 0 | 0.00 | |
| 55초과-60이하 | 4 | 3.15 | 2 | 2.27 | 0 | 0.00 | 0 | 0.00 | |
| 60초과-65이하 | 6 | 4.72 | 1 | 1.14 | 1 | 1.69 | 0 | 0.00 | |
| 65초과-70초과 | 3 | 2.36 | 4 | 4.55 | 3 | 5.08 | 0 | 0.00 | |
| 70초과-75이하 | 7 | 5.51 | 1 | 1.14 | 5 | 8.47 | 2 | 12.50 | |
| 75초과-80이하 | 17 | 13.39 | 9 | 10.23 | 8 | 13.56 | 1 | 6.25 | |
| 80초과-85이하 | 21 | 16.54 | 11 | 12.50 | 10 | 16.95 | 1 | 6.25 | |
| 85초과-90이하 | 25 | 19.69 | 19 | 21.59 | 12 | 20.34 | 6 | 37.50 | |
| 90초과-95이하 | 30 | 23.62 | 24 | 27.27 | 16 | 27.12 | 4 | 25.00 | |
| 95초과-100이하 | 8 | 6.30 | 12 | 13.64 | 4 | 6.78 | 2 | 12.50 | |
| 계 | 127 | 100.00 | 88 | 100.00 | 59 | 100.00 | 16 | 100.00 | |
| 평균 | 82 | 2.07 | 84 | 1.50 | 84 | 1.50 | 87.00 | | |
| 표준편차 | 12 | 2.10 | 12 | 2.30 | 8 | .44 | 6 | .81 | |

자료: 변화순 외(2010), "2010년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에서 재구성.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관은 근거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시설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평가자료는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자료 중 하나이다. 2010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평가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79.5%와 성폭력 상담소 85.2%가 75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보호시설의 분포도 이와 유사한데, 가정폭력 보호시설 84.8%와 성폭력 보호시설 87.5%가 75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관련 현황

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규모

가정폭력과 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 인력수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는 2006년 815명에서 2010년 709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상담소 수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폭력 상담소의 종사자 수는 2006년 606명에서 2010년 454명으로 감소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2010년 282명, 성폭력 보호시설은 90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0년 여성긴급전화 1366에는 146명, 통합상담소는 130명이 종사하고 있다. 성매매를 제외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는 2010년 총 1,8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근무년수

2010년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가정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재직기간은 1년 이 하 종사자가 14.8%이고, 1년 초과 3년 이하가 38.7%로 전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53.5%가 3년 이하 재직하는 종사자이다. 같은 해 성폭력 지원시설의 경우를 보면 1년 이하 종사자가 23.2%이고, 1년 초과 3년 이하가 39.4%로 62.6%가 3년 이하의 재직기간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표 요약-2〉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의 근무년수

(단위: %, (개소))

| 78 | 2007년도 | 근무년수 | 2010년도 근무년수 | | | |
|-------|------------|------------|-------------|-----------|--|--|
| 구분 | 가정폭력 지원시설 | 성폭력 지원시설 | 가정폭력 지원시설 | 성폭력 지원시설 | | |
| 1년 이하 | 20.2 | 15.0 | 14.8 | 23.2 | | |
| 3년 이하 | 32.0 | 40.8 | 38.7 | 39.4 | | |
| 5년 이하 | 26.5 | 23.3 | 23.2 | 24.2 | | |
| 5년 초과 | 21.3 | 20.8 | 23.2 | 13.1 | | |
| 계(수) | 100.0(366) | 100.0(120) | 100.0 (155) | 100.0(99) | | |

자료: 김승권 외(2007),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김승권 외(2007),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김재엽 외(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재가공.

주: 2010년 근무기간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이처럼 종사자 재직 경력이 짧은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 장기간에

절쳐 경험을 축적한 사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관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시설장 60개월, 상담원 33개월이다(김옥녀, 2010).

다. 종사자 직무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요구

2010년 실태조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종사자 증원 · 충원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성폭력보호시설 85.7%, 가정폭력보호시설 59.5%로 높게 나타났지만, 상 담소의 경우는 30%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나타남으로서, 증원 · 충원과 관련하여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처한 여건이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자가 당면한 어려움에 관한 응답에서는 상담이나 지원의 전문성 부족, 심리상담의 기술 부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종사자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어야 할 것이다.

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임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사이에서 임금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다. 2010년 기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급여 현황을 보면 성매매 관련 지원시설에 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요약-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급여 등 현황

(단위: 원)

| | | (2 11 2) |
|---------|--------------------------|------------------------------------|
| | 구분 | 연간 급여 |
| 성폭력 | 보호시설 | 시설장: 18,954,000 종사자: 14,797,920 |
| () 수익 | 상담소 | 소 장: 18,954,000 상담원: 14,797,920 |
| 가정폭력 | 보호시설 | 시설장: 18,081,800 종사자: 14,093,500 |
| 770 = 1 | 상담소 | 시설장: 18,051,800 종사자: 14,093,500 |
| 성매매 |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 22,150,000 |

자료: 여성가족부. 2011년. 내부자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연간급여를 월급여로 환산해서 비교해보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는 120여만원 수준인데, 이는 사회복지사 173.5만원과 상담심리사 150만원에 못 미치고 있다. 성매매 관련 시설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185만원 수준이어서 사회복지사 평균급여보다 조금 높다.

Ⅳ.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1.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

가. 자격제도의 종류

자격의 종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기초하여 관리·운영되며,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나눠진다. 다양한 종류의 민간자격이 신설되고 있지만, 이것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의심되고 있다. 일부 민간자격의 경우 국가공인 절차를 통해서 자격관리, 운영역량, 신설자격에 대한 타당성이 점검되지만, 자격부여기관의 전문성이나 자격의 질과 관련하여서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된다(이동임 외, 2006). 자격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자격부여 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격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조정윤외, 2010).

나.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서비스산업에 근거하여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종목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서비스산업 분야에는 총 1,504개 자격종목이 있는데, 이중 국가기술자격이 131개, 개별법의 국가자격 123개, 민간자격 1,250개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윤정 외, 2010). 사회서비스 분야 중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2010년 9개의 국가기술자격과 32개의 개별법상의국가자격, 112개의 민간자격이 있다.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은 보건・의료분야 1개 종목과 사회복지분야 2개 종목 등 총 3개이며, 나머지 109개 자격은 순수 민간자격이다(박종성 외, 2010).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국가가 관

리하는 면허 성격의 자격 비중이 높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간자격 종목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다. 사회서비스 분야 검정실시 기관별 자격종목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총 3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총 21개의 자격종목에 대해서 검정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개, 각시·도지사에서 1개 종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외, 2010).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경우 해당 부처가 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사회복지사1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시험을 검정·관리하고 있다.

라.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검정 방법 및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필기시험을 검정방법으로 택하고 있고, 2급과 3급은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청소년상담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 및 급수에 맞는 학위를 보유한 사람에 한하여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데, 검정방법으로 필기와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은 관련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만이 취득할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자격을 요하고 있다.

마.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미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취득 이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 후 필기와 구술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문적 수준의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쌓아야 한다.

2.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가. 심리상담관련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심리상담과 관련된 자격검정기관은 다양하고 운영기관별로, 응시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검정과목이 달라 민간자격에 대한 질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개선방안으로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자격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노동시장에서의 혼란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국가자격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와 유사한 민간자격으로 진로 및 경력지도 관련 자격, 심리지도 관련 자격, 자기주도학습 관련 자격, 상담 관련 자격 등이 있지만자격종목과 자격관리기관에 따라 응시자격 기준이 상이하다. 자격증 응시자격을일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자격 취득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자격과의 직무영역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둘째, 사회복지사 2급은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해 사회복지인력 전체의 질적 하락 야기, 셋째, 현장 실무능력이 반영되지 않은 사회복지사 자격, 넷째, 자격증 제도와 직무표준화의 괴리 등이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안으로 첫째, 사회복지사 2급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을 통합하거나 2급을 존속시킨다면 과정형 이수자격에서 시험을 보는 검정형 이수 자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 현행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을 폐지하고 준사회복지사 시험, 사회복지사 시험(social worker), 전문사회복지사 (professional social worker)시험 별로 응시자격과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V.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1. 종사자 자격부여 현황

가. 종사자 자격관련 법적 근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제19조), 보수교육의 실시(제20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종사자 자격기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관련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등에 관해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현황

가정폭력 종사자 교육과정은 소양분야(복지, 여성, 인권, 가족) 15시간, 전문분야 I(가정폭력관련 법) 30시간, 전문분야 II(상담기법) 35시간, 전문분야 III(실습) 20시간으로 총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성폭력 종사자 교육과정은 소양분야(복지, 여성, 인권, 성폭력) 15시간, 전문분야 I(성폭력관련 법) 30시간, 전문분야 II (상담기법) 35시간, 전문분야 III(실습) 20시간으로 총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성매매 종사자 양성교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소양분야(여성복지, 여성정책 등) 10시간, 전문분야(이론: 성매매관련 법 및 정책 등) 25시간, 전문분야(실무: 상담기법, 자활, 행정 등) 65시간, 현장실습(아웃리치, 법률지원 동행 등) 50시간으로 총 1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가. 종사자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8조에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9조 별표4에서 보수교육 실시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4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4조에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2, 별표 4의 2에서 보수교육 실시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5조 2에서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9조의 4, 별표 4의 2에서 보수교육 실시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을 비롯하여 대학, 전문대학,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총 11개 교육과정을 17회 연간 일정으로 운영하였다. 교육인원수는 2010년 574명에서 2011년에는 630명으로 증가하였다. 성매매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연간 교육일정, 선발기준 및 교육인원을 별도로공고하는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다.

3. 종사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문제점

가. 양성교육의 문제점

양성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다양한 교육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둘째, 상담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 셋째, 양성교육 목표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 보수교육의 문제점

보수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서울 중심으로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체계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식 교육방법이 부족하다.

V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1.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첫째,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워크샵식 수업 등 교육생의 참여식 교육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훈련 기관 선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 통한 전문화 양성이 필요하다.

2.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은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종사자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부터 법으로 규정되었고, 종사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 왔기때문이다.

〈표 요약-4〉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원 응시자격 |
|----|---|
| 1급 | 성폭력상담원 + 경력 5년 가정폭력상담원 + 경력 5년 성매매상담원 + 경력 5년 |
| 2급 | 성폭력상담원 + 경력 2년 가정폭력상담원 + 경력 2년 성매매상담원 + 경력 2년 |
| 3급 | 현행 상담원 자격 [개별자격 + 일정 교육이수] |

- 주: 1. 경력은 해당분야 상담소, 시설,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
 - 2. 1급과 2급은 시험을 통해 자격을 검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격제도 개선안은 종사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응시자격을 등급화하고, 여타 대부분 국가자격제도가 시험을 요구하듯이 일정 응시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

| 격제 자, | | | | | | | | | | 택담당 다. | 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 Ι. | 서 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2. 연구 방법 |
| |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5 |
| Ι.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배경7 |
| | 1.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등장과 성장9 |
| | 2.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9 |
| | 3.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11 |
| Ш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13 |
| ш. | |
| |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
| | 2.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평가 현황 21 |
| |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현황25 |
| | 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규모25 |
| |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근무년수27 |
| | 다. 종사자 직무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요구29 |
| | 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임금33 |
| W. |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39 |
| | 1.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 |
| | 1. |
| | |
| | 나.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42 |
| | 다. 사회서비스 분야 검정실시 기관별 자격종목 |
| | 라.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검정 방법 및 응시자격45 |
| | 마.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47 |

| 2. |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48 |
|----------|--|
| | 가. 심리상담관련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48 |
| | 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52 |
| | |
| V. 0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57 |
| 1. | 종사자 자격부여 현황 59 |
| | 가. 종사자 자격관련 법적 근거 59 |
| | 나.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현황69 |
| 2. |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83 |
| | 가. 종사자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83 |
| |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88 |
| 3. | 종사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문제점95 |
| | 가. 양성교육의 문제점95 |
| | 나. 보수교육의 문제점 |
| | |
| | |
| W. 0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107 |
|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107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109 |
| | |
|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109 |
|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109 가.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109 |
|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
|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
| 1.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
| 2.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
| 2.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
| 1. 2.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

표 목 차

| <丑 | ∐-1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6 |
|----|--------------|----------------------------------|
| <丑 | Ⅲ-2> |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전달체계17 |
| <丑 | Ⅲ-3>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산액 18 |
| <丑 | Ⅲ-4> |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평가 분포22 |
| <丑 | Ⅲ-5> | 가정폭력·성폭력 지원·미지원 상담소 평가점수 분포표24 |
| <丑 | Ⅲ-6> | 연도별 여성폭력시설 운영현황25 |
| <丑 | Ⅲ-7> |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의 근무년수27 |
| <丑 | Ⅲ-8> | 종사자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의 시급성30 |
| <丑 | Ⅲ-9> | 종사자가 당면한 어려움의 내용 |
| <丑 | Ⅲ-10>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급여 등 현황34 |
| <丑 | Ⅲ-11> | 사회복지 분야 자격별 급여 수준36 |
| <丑 | Ⅲ-12> | 시설유형별 월평균 보수수준36 |
| <丑 | IV-1> |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서비스산업의 자격종목 수43 |
| <丑 | IV-2>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44 |
| <丑 | IV-3>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46 |
| <丑 | IV-4> |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47 |
| <丑 | IV-5> |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48 |
| <丑 | IV-6> | 전문상담 관련 국가자격의 응시자격49 |
| <丑 | IV-7> | 전문상담 관련 민간자격의 영역 분류 및 응시자격50 |
| <丑 | IV-8>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안(II)55 |
| <丑 | V-1> |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상담원 자격기준(개별기준)60 |
| <丑 | V-2> |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상담원 교육분야62 |
| <丑 | V-3> |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
| | | 자격기준63 |

| <丑 | V-4> | 가정폭력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 강사의 |
|----|-------|---|
| | | 자격기준64 |
| <丑 | V-5>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65 |
| <丑 | V-6> |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66 |
| <丑 | V-7> |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개별기준) 67 |
| <丑 | V-8> | 성매매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68 |
| <丑 | V-9> | 성폭력 상담상담원 양성교육 시간표72 |
| <丑 | V-10> | 성폭력상담원 양성 교육 소감 및 제안사항74 |
| <丑 | V-11> |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프로그램74 |
| <丑 | V-12> | 가정폭력상담전문교육 교육내용77 |
| <丑 | V-13>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교육 소감과 개선점 및 제안사항79 |
| <丑 | V-14> | 가정폭력상담원 보수교육 프로그램79 |
| <丑 | V-15> | 2011년 제1기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시간표(3.28-4.26)… 81 |
| <丑 | V-16> | 성폭력 관련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84 |
| <丑 | V-17> | 가정폭력 관련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86 |
| <丑 | V-18> | 2010년도 가정·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일정 |
| | | 및 교육인원91 |
| <丑 | V-19> | 종사자의 보수교육 경험 및 욕구92 |
| <丑 | VI-1> | 자격제도가 지향해야 할 3대 요소113 |
| <丑 | VI-2> |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115 |

그 림 목 차

| <그림 | ∐-1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일반 예산액 \cdots 20 |
|-----|--------------|--|
| <그림 | Ⅲ-2>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액20 |
| <그림 | Ⅲ-3> | 성매매지원시설 운영 지원액21 |
| <그림 | Ⅲ-4>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평가 분포23 |
| <그림 | Ⅲ-5> |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평가 분포 23 |
| <그림 | Ⅲ-6> | 연도별 여성폭력시설 종사인력 수 26 |
| <그림 | Ⅲ-7> | 가정폭력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년수 비교 표28 |
| <그림 | Ⅲ-8> | 성폭력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년수 비교 표29 |
| <그림 | Ⅲ-9> | 종사자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의 시급성30 |
| <그림 | Ⅲ-10> |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를 위한 개선점31 |
| <그림 | Ⅲ-11> | 종사자가 당면한 어려움의 내용 |
| <그림 | Ⅲ-12>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 비율 비교 35 |
| <그림 | IV-1>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안(I)53 |
| <그림 | V-1> | 종사자의 보수교육 미참여 이유93 |
| <그림 | V-2> | 종사자의 보수교육 제공 희망 시설94 |

서 론

|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 2. | 연구 방법 | 4 |
| 3. |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등장은, 여성폭력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과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여성운동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기관 종사자의 자격, 상담원 양성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이 법에서 규정되었다. 관련 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지원기관과 종사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와 관련된 자격부여 방식은 초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상담원혹은 종사자 자격은 현재 국가자격도 민간자격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와 관련하여 법 제정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격제도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여성폭력을 문제시하는 관점이 새로운 것이었고, 종사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이론 및 현장경험에 기초한 적절한 교육체계가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관련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이 처음부터 세밀하고체계적으로 제시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여성폭력 지원기관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양성 및 보수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수준 제고와 관련하여 종사자 자격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전길량 외, 2006). 이제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과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현재의 종사자 자격부여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종사하는 상담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훈련내용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하여 양성기관 특성에따라 교육 내용의 편차가 크고,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상담원의 전문적 자질을 키우는 데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변혜정 외, 2005;

4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전길량 외, 2006). 양성기관별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전길양 외, 2006). 관련 기관에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에 비해 훈련기관이 배출하는 사람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데, 가정폭력상담원의 경우 2004년 1,270명이 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었는데, 2010년에는 그 수치가 1,897명으로 급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종사자의 직무와 관련된 현황을 검토하고, 자격제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현재의 자격부여, 양성교육, 보수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를 검토한 후 자격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및 종사자와 관련된 정부자료를 참고하였다. 종사자와 관련된 실태 파악을 위해서 2007년과 2010년에 실시된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성매매의 경우도 종사자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활용할 수 없었다.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로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사자 자격과 관련된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의 관련지침, 상담원 양성 및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내부자료, 관련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양성교육, 보수교육, 자격부여 방식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8월 24일과 8월 31일 2차례에 걸쳐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9명에 대해서집단 FGI를 실시하였다.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는 현행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참고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지난 10여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예산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관련 피해자 지원기관 및 종사자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자격부여 및 종사자 양성과 관련된 제도는 법 제정 당시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제도는 불완전한 상태로존재하는데, 국가자격도 민간자격도 아닌 상태이다. 종사자 직무와 관련하여법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많은 환경적 변화가 있고, 관련 현장 경험의 축적및 인적 자원의 축적이 있기에, 이제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탈피하여 종사자자격강화의 방안으로 종사자 자격제도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 수준의 질 개선, 종사자 양성교육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관련 종사자의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된 초기 연구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자격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 및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현재 종사자의 처우가 여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와 비교하여 열악한데, 그 배경은 해당 기관 등장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여성운동에서 촉발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등장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이 있는지 연결시키려고 한다. 또 피해자 지원기관 및 종사자 수의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종사자의 직무 및 근로여건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려고 한다. 해당 종사자의 직무가 소속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를통해 여성폭력 피해시설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현행종사자 자격부여, 양성교육, 보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1)

¹⁾ 자격제도 논의의 최종적 목적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향상이다. 서비스 질이 자격제도와 관련된 이유는 종사자 지위와 처우 때문 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헌신에 달려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타 유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종사자의 빈번한 이직은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여성폭력 관련

6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현장의 종사자, 정책담당자, 연구자 사이에서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본 연구는 향후 관련 논의를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위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기관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서 규정되고, 또 관련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자격부여 및 훈련과 관련된 제도는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종사자 자격제도의 체계화를 통해서 우수한 종사자들이 확보될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배경

|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등장과 성장 | 9 |
|---|----|
|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 9 |
| 3.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 11 |

1.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등장과 성장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자격체계나 관련 현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들 기관의 등장과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한국에서도 그러하였듯이 피해자 지원 단체의 활동은 선진국에서도 여성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이 설립되었다(이원숙, 1998).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여성단체의 주요 조직이었는데, 이들 조직은 다수의 자원봉사자와 소수의 유급 직원으로 운영되었다(이원숙, 1998). 이들은 여성폭력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였는데, 초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의 권리와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피해자 지원을 임파워먼트 (Empowerment)로 접근하였다(신상숙, 2006).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경찰과 의료계의 관행은 이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는데, 경찰과 의료진은 피해자의 권리와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보장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충격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Loss and Harvey, 1991). 여성활동가들은 경찰이나 의료진들이 피해자가 성폭력의 상처로부터 회복하고 생존하는 능력을 가진 사실을 간과한다고 비난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자 임파워먼트는 전통적 의료, 법, 정신보건 관행에 대한 도전이었다(Loss and Harvey, 1991).

2.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선진국의 경우 여성운동 단체에 의해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여성폭력 이 슈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화를 경험하게 된다

(Jung, 2002; Martin, 1990; 이원숙, 1997).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피해자 지원 과정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데 초기의 운동의 성격이 약화되면서 피해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제도화의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이 변하였고, 피해 여성 지원은 관료화, 전문화, 서비스화의 경향을 띠게 된다(신상숙, 2006).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여성폭력 지원기관이 등장하는 시기, 정치영역에서 페미니스트의 영향력이 컸던 호주에서 성폭력위기센터는 1970년대 중반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였다. 이들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병원, 사법체계에서 다뤄지는 방식에 도전하면서 기존 상황을 변화시키려 했다(Carmody, 1992). 그러나,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운동적 관점이크게 약화되었고 여성폭력 이슈는 의료적, 심리적, 법적, 기술적 문제로 처리되는 경향을 보였다(Wilson, 1997).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촉발시켰던 초기의 여성주의적 관점은 약화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영국, 미국, 호주의 강간위기센터(SACs)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신상숙, 2007a; Jung, 2002).

정부예산 투입 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기존의 가부장제적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활동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제공하였다. 정부지원이 지속되면서 피해자 지원 시설은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 인식되었다 (Mathews, 1994; Mueller, 1995). 정부의 예산으로 인한 관료제적 간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통한 여성주의적 가치의 실현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부가 요구하는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었다(Mathews, 1994; 1995).

정부예산 지원에 따라 운동의 성격은 약화되었고, 여성폭력을 개인 피해자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지원금을 받는 센터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치료 모델이도입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의료적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호주, 캐나다, 미국에 설치된 성폭력연계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ers; SARCs)는 병원이나 지역사회 센터에 설치되었는데 이들의 서비스 접근방식은 초기 여성주의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센터들에게는 지역사회

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지만, 정부가 이들 센터들에게 바라는 바는 예방(prevention)보다는 치료 (treatment)였다(Mathews, 1994; 1995).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Mathews, 1994; 1995).

3.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설립과 발전과정이 여성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데, 피해자 지원단체는 여성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심영희, 1998; 이미정, 2000). 1980년대 초 여성의 전화는 '가부장제 이념과 제도, 남성중심적 가치관과 규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그리고 군사문화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을 '성폭력 (gender violence)'으로 개념화하여 여성인권운동을 추구해나갔다(박인혜, 1998). '여성의 전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이며 쉼터였는데, 이에 대한 폭력피해 여성의 반응은 폭발적이어서 당시 가정폭력문제가 심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84).

1991년 한국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설립되었다. 이 성폭력상담소는 강간, 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다. 유교적 가부장제 전통에서 유지되어 온 성폭력 통념에 도전하여 책자를 출판하고, 세미나 자료 및 비디오를 제작·배포하였다. 출판활동, 강연, 언론을 통해 성폭력을 사회적 의제로 등장시키는데 성공적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과감하게 도전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폭력을 개별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가부장제적 사회의 남녀 간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였다.

90년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서 법이 제정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성연합은 1996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전국차

12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원의 지역운동을 통해서 1997년 11월 가정폭력방지법이 통과되는데 기여한 다(박인혜, 2008).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처럼 한국에서도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단체들 간의 경쟁, 운동성의 약화, 기관 자율성의 약화가 나타난다(김현정, 2000; 신상숙, 2007).

정부지원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은 민간의 자율성 침해, 민간기관의 목적 및 활동목표 왜곡 및 관료화 현상이고, 긍정적 측면은 물적자원 확보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여 시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소정, 2005). 한국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에 물적 기반이 단기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했다(김현정, 1999). 정부의 지원 이전에는 여성운동 단체를 주축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지만, 정부지원 이후부터는 이들의 활동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제공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며 운동성이 약화된다. 상담소 및 쉼터 운영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관료제적 통제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김소정, 2005; 김현정, 1999).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 1.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 15 |
|----|---------------------|----|
| 2. |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평가 현황 | 21 |
| 3.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현황 | 25 |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관련된 현황이 <표 Ⅲ-1>와 <표 Ⅲ-2>, <표 Ⅲ-3>에 정리되어 있다. 관련 기관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1년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32억원에서 292억원으로 9배가량 증가하였다. 각 시설 유형별로 예산액의 변화를 보자.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지원예산은 7억원에서 30억원으로 4배 이상증가하였고,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3억9천만원에서 29억원으로 7.5배 증가하였다. 성폭력상담소의 경우는 동 기간 14억원에서 27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성폭력보호시설은 1억6천만원에서 8억6천만원으로 5.3배 증가하였다. 상담소에 비해 보호시설의 정부지원 예산 증가폭이 더 컸으며, 성폭력 지원기관에 비해 가정폭력 지원기관 관련 예산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관련기관에 대한 정부예산의 증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소 수의 변화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2001년 142개소에서 2010년 249개소를 1.8배 가량 증가하였고, 지원받는 상담소 수는 동기간 46개소에서 93개소로 2배로 늘었다. 성폭력 상담소의 수는 2001년 92개소에서 160개소로 1.7배 늘었고, 지원받는 상담소는 56개소에서 87개소로 1.5배 증가하였다. 2010년 지원받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비율은 개선되었다. 2008년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가정폭력 상담소 비율은 25.9%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 39.4%로 크게 증가하고, 성폭력 상담소의 경우는 40.1%에서 41.9%로 큰 변화가 없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는 85.7%에서 96.9%로 증가하고, 성폭력 보호시설은 90%에서 100%에 달하게 된다. 보호시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표 Ⅲ-1〉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0. 12. 기준, 단위: 개소)

| | 가정폭력 상담소 | 성폭력 상담소 | 통합상담소 | 가정폭력 보호시설 | 성폭력 보호시설 | 여성긴급 전화『1366』 | ONE-STOP 지원센터 | |
|-------------------------|----------------------|------------------|------------------|---|---------------------------------|---|---|--|
| 시설수 | 249 | 160 | 26 | 64 | 19 | 16 | 17 | |
| 예산지원 시설수 | 93 | 87 | 10 | 62 | 19 | 16 | 17 | |
| 전체대비 | 39.4% | 41.9% | 38.5% | 96.9% | 100% | 100% | 100% | |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성폭력피해 여성 |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동 | 성폭력피해 여성 | 가정폭력 · 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 가정폭력 · 성폭력/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 | |
| 주요업무 | 상담,피해자 연계 | 상담,피해자 연계 | 상담,피해자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 | 피해여성상담, 피해자구조,관 련기관연계,긴 급피난처운영, 상담소 퇴근 시 착신 업무 | 가정폭력 · 성 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 수사/ 의료지원 | |
| 보호기간 | | | | 6월(+3월) 장기시설:2년 이내,일시보호: 3일(+7일) | 6월(+1년 6월) | 긴급피난처 기능 | | |
|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 |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위탁 운영원칙, 지방 자치단체직영 | 3자협약: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 | |
| 예산지원액 ('10기준, 천원) | 61,919 | 62,578 | 99,904 | 정원대비차등 지원(52,952 ~141,666) | 정원대비차등 지원(63,150 ~77,948) | 서울 · 경기 (287,862), 기타지역 (269,142)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 | 인건비/사업비 구분 없이 총액지원 | | | | | | | |
| 지원방식 | | | | | | 인건비 및 네트워크 구축비 포함 | 수사 및 인력 별도 | |
| 인건비 | 소장: 19,570 19,570 | | 16,879 | | 18,052 | 26,501 | | |
| ('09기준, | 상담원: 14,094 14,094 | | 13,177 | | 14,094 | 24,423 | | |
| 천원) | | 행정: 종사자 | 중 행정직원에 (| 대한 규정 없음. 예산지원불가 | | | 19,430 | |
| 종사자 | 3명(소장1+ 상담원2) | 3명(소장1+ 상담원2) | 5명(소장1+ 상담원4) | 3명(입소정원5 ~10인 기준) 4명(11~30인) 5명(31인이상) | 3명(소장+상담 원2) | 10명 (서울,경기), 9명(14개시·도) | 6명(팀장1+상 담원4+의료인 력 +행정요원1) | |

II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bullet \bullet \bullet$ 17

| | 가정폭력 상담소 | 성폭력 상담소 | 통합상담소 | 가정폭력 보호시설 | 성폭력 보호시설 | 여성긴급 전화『1366』 | ONE-STOP 지원센터 |
|-----------|--|--|--|--|--|----------------------------------|-----------------------------------|
| 종사자 기준 | 4년제대학에서 2년 이상수료 +가정폭력양성 교육100시간 이수 | 4년제대학에서 2년 이상수료 +성폭력양성 교육64시간 이수 | 4년제대학에서 2년 이상수료 +가폭/성폭양 성교육이수 | 4년제대학에서 2년 이상수료 +가정폭력양성 교육100시간 이수 | 4년제대학에서 2년 이상수료 +성폭력양성교 육64시간이수 | 상담소종사자 자격+상담소근 무경력1년 이상 | 사회복지사2급 +가정/성폭력 상담원교육 이수 |
| 근무시간 | 주5일 평일8시간(09:00~18:00) | | | 주5일, 평일8시간 (09:00~18:00) 휴일·아간1인 이상 상시근무 | | 365일24시간3교대근무 | |
| 설치기준 | 신고제 | | | 허가제 | 신고제 | 시·도별1개소 의무설치 | 시·도별1개소 설치 |

자료: 여성가족부(2011),「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재구성, 이미정 외 (2008), p. 59.

주: 인건비는 '08.8.20일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금액임.

〈표 Ⅲ-2〉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1. 01. 기준, 단위: 개소)

| | 성매매 상담소 | 성매매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 성매매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 성매매 그룹홈 | 성매매 자활지원 센터 |
|------|-------------|--|--|--|-------------------------|--|
| 시설수 | 27 | 41 | 2 | 1 | 11 | 9 |
| 대상 | 성매매 피해자등 | 성매매 피해자등 | 성매매 피해자등 | 성매매 피해자등 | 성매매 피해자등 | 성매매 피해자등 |
| 주요업무 | 대한 현장 상담, | 급부수령 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 청소년 지원시설은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및 | 청소년들에게 위탁교육형식으로 의무교육 제공 및 다양한 학습 기회지원, 위기청소년들의 심신의 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력 배양을 | 피해여성 긴급보호 통역서비스 제공,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대시관 등 관계기관 연계 숙식제공, 귀국지원 등 | 성매매피해자 일정기간 주거 지원 | 탈성매배여성 전업 준비를 위한 훈련, 공동작업장 등 일자리 제공, 취업 및 창업 지원, 외부자원 활용, 연계망 구축 취업・창업자 사후관리 등 |

18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 | 성매매 상담소 | 성매매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 성매매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 성매매 그룹홈 | 성매매 자활지원 센터 | |
|-------------------------|-------------------------------------|----------------------------------|--|---|--------------------------------|------------------------------------|--|
| 보호기간 | | 1년(+6월) *청소년은 19세에 도래할 때까지 | | 3월 *수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 까지 입소 연장 | 1년(+6월) *3년 도달할 때까지 연장가능 | | |
|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 예산지원액 ('10기준, 천원) | 130,220 | | 1개소당 91,050천원 이내 | 77,952 | 1개소당 44,910천원 이내 | 235,900 | |
| 종사자 | 5명(소장1+상담원3 +시무지원1) | 5명(입소 7명(입소 | 3명(입소정원 8이상~10미만 기준) 5명(입소정원 10이상~15미만 기준) 7명(입소정원 15이상~20미만 기준) 9명(입소정원 20이상 기준) | | | 6명(소장1+상담원2 +직업훈련교사2+ 사무지원1) | |
| 종사자 기준 | 전 4년제대학에서 2년 이상수료+성매매방지 종사자 양성교육 이수 | | | | | | |
| 근무시간 | 주5일 평일8시간 (09:00~18:00) | | | | | | |
| 설치기준 | | | 신고 | <u></u> | | | |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재구성.

〈표 Ⅲ-3〉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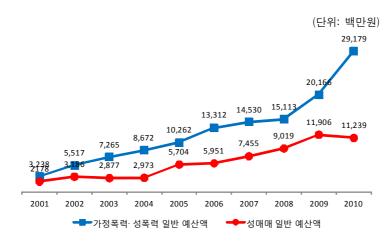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 가정폭력·성폭력 일반 예산액 | 3,238 | 5,517 | 7,265 | 8,672 | 10,262 | 13,312 | 14,530 | 15,113 | 20,166 | 29,179 |
| □ 성매매 일반 예산액 | 2178 | 3,186 | 2,877 | 2,973 | 5,704 | 5,951 | 7,455 | 9,019 | 11,906 | 11,239 |
| ○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운영 지원액 | 710 | 954 | 1,001 | 1,051 | 1,196 | 1,418 | 1,965 | 2,459 | 2,440 | 3,003 |
| - 총 상담소 수 | 142 | 159 | 175 | 182 | 268 | 343 | 302 | 277 | 275 | 249 |
| - 지원받는 상담소 수 | 46 | 60 | 60 | 60 | 65 | 65 | 65 | 85 | 82 | 93 |
| - 운영 평균 지원액 | 15.4 | 15.9 | 16.7 | 17.5 | 18.4 | 21.8 | 30.2 | 28.9 | 29.8 | 32.3 |
| ○ 가정폭력보호시설 | | | | | | | | | | |
| - 운영 지원액 | 389 | 651 | 919 | 980 | 1,220 | 1,932 | 2,253 | 2,789 | 2,775 | 2,898 |
| - 총 보호시설 수 | 30 | 31 | 37 | 48 | 57 | 59 | 70 | 65 | 66 | 64 |
| - 지원받는 보호시설 수 | - | - | - | - | 42 | 57 | 63 | 62 | 63 | 62 |

Ⅲ.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 19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 운영 평균 지원액 | - | - | - | - | 29.0 | 33.9 | 35.8 | 45.0 | 44.0 | 46.7 |
| ○ 성폭력상담소 | | | | | | | | | | |
| - 운영 지원액 | 1,372 | 1,564 | 1,642 | 1,669 | 1,773 | 1,915 | 2,107 | 2,459 | 2,440 | 2,704 |
| - 총 상담소 수 | 92 | 105 | 117 | 95 | 143 | 173 | 171 | 173 | 164 | 160 |
| - 지원받는 상담소 수 | 56 | 62 | 62 | 63 | 65 | 65 | 65 | 85 | 88 | 87 |
| - 운영 평균지원액 | 24.5 | 25.2 | 26.5 | 26.5 | 27.3 | 29.5 | 32.4 | 28.9 | 27.7 | 31.1 |
| ○ 성폭력보호시설 | | | | | | | | | | |
| - 운영 지원액 | 163 | 262 | 307 | 373 | 435 | 522 | 617 | 719 | 755 | 862 |
| - 총 보호시설 수 | 8 | 11 | 12 | 15 | 16 | 17 | 20 | 18 | 19 | 19 |
| - 지원받는 보호시설 수 | - | - | - | - | 15 | 15 | 17 | 18 | 18 | 19 |
| - 운영 평균 지원액 | - | - | - | - | 29.0 | 34.8 | 36.3 | 39.9 | 41.9 | 45.4 |
| ○ 여성긴급전화『1366』 | | | | | | | | | | |
| - 운영 지원액 | 359 | 1,106 | 1,160 | 1,216 | 1,277 | 1,557 | 1,672 | 1,354 | 1554 | 2,083 |
| - 총『1366』수 | 16 | 16 | 16 | 16 | 16 | 17 | 17 | 16 | 16 | 16 |
| ○ 통합상담소 | | | | | | | | | | |
| - 운영 지원액 | 0 | 0 | 259 | 432 | 432 | 453 | 453 | 467 | 477 | 4,797 |
| - 총 통합상담소 수 | 0 | 0 | 39 | 29 | 29 | 29 | 28 | 23 | 28 | 26 |
| - 지원받는 통합상담소 수 | 0 | 0 | 6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성매매지원시설 | | | | | | | | | | |
| - 운영 지원액 | 1,815 | 1,817 | 2,506 | 2,653 | 3,332 | 5,422 | 6,511 | 6,813 | 7,625 | 8,227 |
| - 총 성매매지원시설 수 | 143 | 67 | 70 | 70 | 75 | 79 | 87 | 91 | 89 | 88 |
| - 지원받는 성매매지원시설 수 | 23 | 25 | 37 | 44 | 30 | 49 | 83 | 83 | 87 | 87 |
| □ 기금 예산액 | 100 | 250 | 318 | 4,270 | 18,834 | 19,320 | 16,834 | 12,527 | 7,947 | 9,078 |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인증진사업 운영지침", 각년도, 이미정 외(2008), p. 65.

- 주: 1. 여성긴급전화『1366』운영 지원액에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 지원액 포함. 기금 예산액에 여성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액 미포함.
 - 2. 상담소 및 보호시설 수는 각년도 12월말 기준.
 - 3. 기금 예산액에는 폭력무료법률구조사업 및 피해자 직업훈련, 성매매방지중앙지 원센터 운영 등이 해당.
 - 4. 2001년, 2002년 성매매지원시설에 여성복지상담소 포함.
 - 5. 2010년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액에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지원액 포함.
 - 6. 2010년 일반예산액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피해자 무료법률지원금을 제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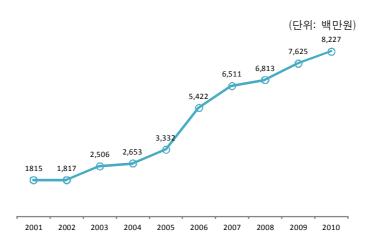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인증진사업 운영지침", 각년도.

〈그림 Ⅲ-1〉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일반 예산액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 · 아동권인증진사업 운영지침", 각년도.

〈그림 Ⅲ-2〉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액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 · 아동권인증진사업 운영지침", 각년도.

〈그림 Ⅲ-3〉 성매매지원시설 운영 지원액

2.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평가 현황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관련 기관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만족도에 달려 있는데, 여성폭력 관련기관의 경우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 이들의 만족도 파악이 어렵다. 또 지원기관은 피해자나 관련 상담내용에 대해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려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관은 근거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시설운영와 관련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의 서비스제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표 Ⅲ-4〉2010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평가 분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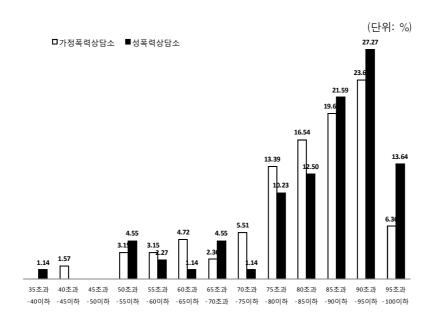
| 78 | 가정폭 | 력상담소 | 성폭력 | 력상 담소 | · 당소 가정폭력보호시설 | | | 성폭력보호시설 | |
|------------|-----|--------|-----|--------------|---------------|--------|-------|---------|--|
| 구분 | 개소수 | 비율 | 개소수 | 비율 | 개소수 | 비율 | 개소수 | 비율 | |
| 35초과-40이하 | 0 | 0.00 | 1 | 1.14 | 0 | 0.00 | 0 | 0.00 | |
| 40초과-45이하 | 2 | 1.57 | 0 | 0.00 | 0 | 0.00 | 0 | 0.00 | |
| 45초과-50이하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
| 50초과-55이하 | 4 | 3.15 | 4 | 4.55 | 0 | 0.00 | 0 | 0.00 | |
| 55초과-60이하 | 4 | 3.15 | 2 | 2.27 | 0 | 0.00 | 0 | 0.00 | |
| 60초과-65이하 | 6 | 4.72 | 1 | 1.14 | 1 | 1.69 | 0 | 0.00 | |
| 65초과-70초과 | 3 | 2.36 | 4 | 4.55 | 3 | 5.08 | 0 | 0.00 | |
| 70초과-75이하 | 7 | 5.51 | 1 | 1.14 | 5 | 8.47 | 2 | 12.50 | |
| 75초과-80이하 | 17 | 13.39 | 9 | 10.23 | 8 | 13.56 | 1 | 6.25 | |
| 80초과-85이하 | 21 | 16.54 | 11 | 12.50 | 10 | 16.95 | 1 | 6.25 | |
| 85초과-90이하 | 25 | 19.69 | 19 | 21.59 | 12 | 20.34 | 6 | 37.50 | |
| 90초과-95이하 | 30 | 23.62 | 24 | 27.27 | 16 | 27.12 | 4 | 25.00 | |
| 95초과-100이하 | 8 | 6.30 | 12 | 13.64 | 4 | 6.78 | 2 | 12.50 | |
| 계 | 127 | 100.00 | 88 | 100.00 | 59 | 100.00 | 16 | 100.00 | |
| 평균 | 82 | 2.07 | 84 | 4.50 | 84.50 | | 87.00 | | |
| 표준편차 | 12 | 2.10 | 12 | 2.30 | 8 | .44 | 6 | .81 | |

자료: 변화순 외(2010), "2010년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에서 재구성.

2010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평가 점수 분포를 살펴보자. 상담소의 경우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가 대체로 75점 이상 점수대에 분포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 79.5%와 성폭력 상담소 85.2%가 75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보호시설의 분포도 이와 유사한데,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84.8%와 성폭력 보호시설의 87.5%가 75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75점 이상 중 가정폭력 상담소의 비율이 가장 낮은데, 이유는 미지원 시설의 비중이 여타 시설 보다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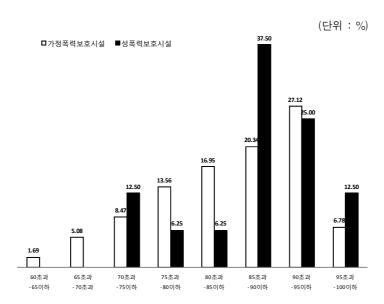
대다수의 시설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다.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시설은 보호시설 중 한 곳도 없지만, 가정폭력 상담소는 7.9%, 성폭력 상담소는 8.0%로 나타났다.

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 23



자료: 변화순 외(2010), "2010년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에서 재구성.

〈그림 Ⅲ-4〉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평가 분포



자료: 변화순 외(2010), "2010년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에서 재구성.

〈그림 Ⅲ-5〉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평가 분포

2010년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은 비율을 지원과 미지원 여부별로 보면, 지원을 받은 가정폭력 상담소 중에는 그 비율이 3.9%, 미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중에서는 24%, 지원 받는 성폭력 상담소 중 2.6%, 미지원 성폭력 상담소 중 40%이다.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이 지원 여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해당점수 비율이 미지원 가정폭력상담소보다 미지원 성폭력상담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담소에 비해서 보호시설의 평가점수 분포가 높은 쪽으로 치우친 것은 지원여부와 관련이 있다. 전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 중 지원 받는 비율은 40% 정도 내외이지만, 보호시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지원을 받는다.

〈표 Ⅲ-5〉가정폭력·성폭력 지원·미지원 상담소 평가점수 분포표

(단위: 개소, %)

| | | -1-1 | | | | | | 711-1, 70) |
|------------|---------|--------|----------|--------|--------|--------|-------|------------|
| | 가정폭력상담소 | | | | 성폭력상담소 | | | |
| 구분 | 지 | 원 | 미기 | 디원 | 지 | 원 | 미기 | 디원 |
|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 35초과-40이하 | 0 | 0.00 | 0 | 0.00 | 0 | 0.00 | 1 | 10.00 |
| 40초과-45이하 | 0 | 0.00 | 1 | 4.00 | 0 | 0.00 | 0 | 0.00 |
| 45초과-50이하 | 1 | 0.98 | 0 | 0.00 | 0 | 0.00 | 0 | 0.00 |
| 50초과-55이하 | 2 | 1.96 | 2 | 8.00 | 2 | 2.56 | 2 | 20.00 |
| 55초과-60이하 | 1 | 0.98 | 3 | 12.00 | 0 | 0.00 | 2 | 20.00 |
| 60초과-65이하 | 2 | 1.96 | 4 | 16.00 | 1 | 1.28 | 0 | 0.00 |
| 65초과-70초과 | 3 | 2.94 | 0 | 0.00 | 2 | 2.56 | 2 | 20.00 |
| 70초과-75이하 | 5 | 4.90 | 2 | 8.00 | 1 | 1.28 | 0 | 0.00 |
| 75초과-80이하 | 15 | 14.71 | 2 | 8.00 | 7 | 8.97 | 2 | 20.00 |
| 80초과-85이하 | 17 | 16.67 | 4 | 16.00 | 11 | 14.10 | 0 | 0.00 |
| 85초과-90이하 | 22 | 21.57 | 3 | 12.00 | 18 | 23.08 | 1 | 10.00 |
| 90초과-95이하 | 28 | 27.45 | 2 | 8.00 | 24 | 30.77 | 0 | 0.00 |
| 95초과-100이하 | 6 | 5.88 | 2 | 8.00 | 12 | 15.38 | 0 | 0.00 |
| 계 | 102 | 100.00 | 25 | 100.00 | 78 | 100.00 | 10 | 100.00 |
| 평균 | 84 | .08 | 08 73.88 | | 87.21 | | 63.41 | |
| 표준편차 | 10 | .18 | 15 | .40 | 9. | 00 | 14 | .05 |

자료: 변화순 외(2010), "2010년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에서 재구성.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현황

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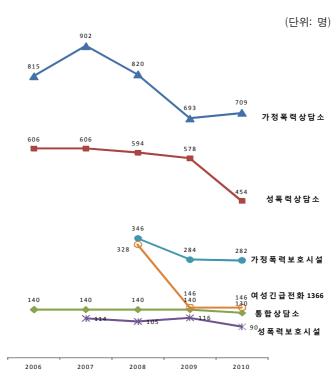
〈표 Ⅲ-6〉 연도별 여성폭력시설 운영현황

(단위: 개소, 명)

| | | | | | | \ | I· 개고, 링/ |
|-----------------|--------------|--------------|--------------|--------------|--------------|--------------|--------------|
| ٦ | 구분 | 06 | 07 | 08 | 09 | 10 | 11 |
| 성폭력 | 개소 (종사인력) | 202 (606) | 202 (606) | 196 (594) | 199 (578) | 152 (454) | 152 (454) |
| 상담소 | 예산지원 | 65 | 75 | 85 | 85 | 87 | 87 |
| | 지원비율 | 32.2 | 37.1 | 43.4 | 42.7 | 57.2 | 57.2 |
| 가정폭력 | 개소 (종사인력) | 372 (815) | 316 (902) | 303 (820) | 275 (693) | 251 (709) | 251 (709) |
| 상 담 소 | 예산지원 | 75 | 85 | 95 | 92 | 93 | 93 |
| | 지원비율 | 20.2 | 26.9 | 31.4 | 33.5 | 37.0 | 37.0 |
| 통 합 | 개소 (종사인력) | 28 (140) | 28 (140) | 28 (140) | 28 (140) | 26 (130) | 26 (130) |
| 상담소 | 예산지원 | 10 | 10 | 10 | 10 | 10 | 10 |
| | 지원비율 | 37.7 | 37.7 | 37.7 | 37.7 | 38.4 | 38.4 |
| 성매매 | 개소 (종사인력) | 27 | 29 | 29 | 29 | 28 | 27 |
| 상담소 | 예산지원 | | | | | | |
| | 지원비율 | | | | | | |
| 성폭력 | 개소 (종사인력) | _ | 20 (114) | 18 (105) | 20 (116) | 19 (90) | _ |
| 보호시설 | 입소정원 | - | 211 | 197 | 214 | 199 | - |
| 가정폭력 | 개소 (종사인력) | - | - | 71 (346) | 66 (284) | 64 (282) | - |
| 보호시설 | 입소정원 | - | - | 1,128 | 1,094 | 1,114 | - |
| 성매매 | 개소 (종사인력) | 64 | 69 | 71 | 63 | 60 | 64 |
| 지원시설 | 입소정원 | 2,142 | 2,213 | 2,139 | 2,405 | 2,455 | - |
| 여성긴급 전화 1366 | 개소 (종사인력) | - | - | 16 (328) | 16 (146) | 16 (146) | - |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주: 통합상담소는 가정·성폭상담소에 포함되어 있음, 성매매지원시설 개소는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대안교육위탁기관,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외국인 지원시설 등을 포함함. 성매매지원시설 입소정원은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을 포함함.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주: 통합상담소는 가정·성폭상담소에 포함되어 있음.

〈그림 Ⅲ-6〉 연도별 여성폭력시설 종사인력 수

관련 예산과 규모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자격 부여 방식은 법제정 당시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제 진지하게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 인력수를 살펴보자. 먼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는 2006년 815명에서 2010년 70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상담소 수의 감소로 인한 것인데, 2006년 가정폭력상담소는 372개소에 달하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251개소에 이르게 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담소들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추측된다. 성폭력 상담소의 종사자 수는 2006년 606명에서 2010년 454명으로 감소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2010년 282명, 성폭력 보호시설은 90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0년 여성긴급전화 1366에는 146명, 통합

상담소는 130명이 종사하고 있다. 성매매를 제외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 관 종사자는 2010년 총1,8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근무년수

〈표 Ⅲ-7〉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의 근무년수

(단위: %, (개소))

| 78 | 2007년도 | 근무년수 | 2010년도 근무년수 | | | |
|-------|----------------|----------------|----------------|---------------|--|--|
| 구분 | 가정폭력 지원시설 | 성폭력 지원시설 | 가정폭력 지원시설 | 성폭력 지원시설 | | |
| 1년 이하 | 20.2 | 15.0 | 14.8 | 23.2 | | |
| 3년 이하 | 32.0 | 40.8 | 38.7 | 39.4 | | |
| 5년 이하 | 26.5 | 23.3 | 23.2 | 24.2 | | |
| 5년 초과 | 21.3 | 20.8 | 23.2 | 13.1 | | |
| 계(수) | 100.0 (366) | 100.0 (120) | 100.0 (155) | 100.0 (9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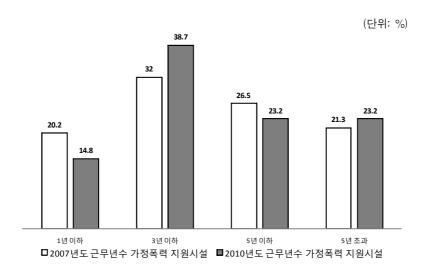
자료: 김승권 외(2007),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김승권 외(2007),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김재엽 외(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재가공.

주: 2010년 근무기간은 1년 미만, 3년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종사자의 근속기간이다. 2010년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종사자 근속기간이
이<표 Ⅲ-9>와 <그림 Ⅲ-9, Ⅲ-10>에 제시되어 있다.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모두 포함한 가정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재직기간 분포를 보자. 2010년 1년 이하 종사자가 14.8%이고, 1년 초과 3년 이하가 38.7%로 전체 종사자의 절반이상에 해당되는 53.5%가 3년 이하 재직하는 종사자이다. 같은 해 성폭력 지원시설의 경우를 보면 1년 이하 종사자가 23.2%이고, 1년 초과 3년 이하가 62.6%가 3년 이하의 재직기간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5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종사자는 가정폭력 지원시설의 경우 23.2%이고 성폭력 지원시설의 경우는 13.1%로 전체적으로 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짧은 곳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종사자 기관 재직 경력이 짧은 것

은 것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은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시설장 60개월, 상담원 33개월이다(김옥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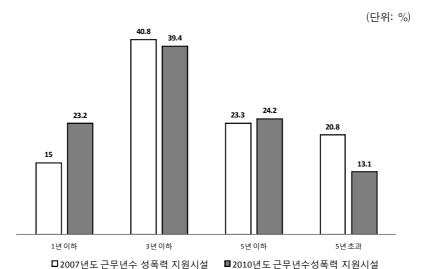
2010년과 2007년 실태조사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재직기간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가정폭력 지원시설을 보면 1년 이하 종사자의 비율은 2007년 20.2%에서 2010년 14.8% 감소한다. 3년 이하 종사자는 32%에서 38.7%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년 이하 재직기간 종사자의 근무기간이 조금 연장되었다. 반면, 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경우 1년 이하 종사자 비율이 2007년 15%에서 23.2%로 크게 증가한 반면 5년 초과 종사자는 20.8%에서 13.1%로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종사자 재직기간이 단축한 것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가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이러한 경향을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폭력 지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감소하는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



자료: 김승권 외(2007), 김재엽 외(2010) 재가공.

주: 2010년 근무기간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그림 Ⅲ-7〉가정폭력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년수 비교 표



자료: 김승권 외(2007), 김재엽 외(2010) 재가공.

주: 2010년 근무기간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그림 Ⅲ-8〉 성폭력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년수 비교 표

다. 종사자 직무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요구

위에서 2010년과 2007년 실태조사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재직기간을 살펴보았고, 특히 성폭력 지원시설 종사 자들이 오래 재직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였다.²⁾ 종사자들은 여성폭력 피해 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고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각각의 유형 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종 사자 충원과 관련하여서는 보호시설에게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서, 종사 자 증원이나 충원 문제가 매우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폭력보호시설 85.7%, 가정폭력보호시설 59.5%로 높게 나타났지만, 상담소의 경우는 30% 수준이거나 그 이하이다. 증원이나 충원과 관련하여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처한 여건이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²⁾ 본 내용과 관련하여 소개되는 종사자 심층 인터뷰 내용은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보고서(이미정 외)에서 발췌·인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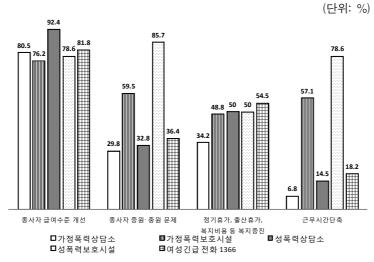
〈표 Ⅲ-8〉 종사자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의 시급성

(단위: %(개소))

| |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보호시설 |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 보호시설 | 여성긴급 전화 1366 |
|-----------------------------|-------------|--------------|------------|-------------|--------------------|
| 종사자 증원·충원 문제 | 29.8(36) | 59.5(25) | 32.8(21) | 85.7(12) | 36.4(4) |
| 종사자 급여수준 개선 | 80.5(98) | 76.2(32) | 92.4(61) | 78.6(11) | 81.8(9) |
| 근무시간 단축 | 6.8(8) | 57.1(24) | 14.5 (9) | 78.6(11) | 18.2(2) |
| 정기휴가, 출산휴가, 복지비용 등 복지증진 | 34.2(42) | 48.8(20) | 50.0(33) | 50.0(7) | 54.5(6) |
|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퍼비젼 | 26.5(32) | 51.2(21) | 33.3(22) | 42.9(6) | 45.5(5) |
| 종사자의 안전문제 | 15.4(19) | 36.6(15) | 21.2(14) | 14.3(2) | 36.4(4) |
| 종사자 보수교육 및 시설 내 교육 확대 | 17.1(21) | 24.4(10) | 16.7(11) | 7.1(1) | 27.3(3) |
| 종사자의 피해자 지원업무 관련 스트레스 관리·상담 | 25.4(31) | 45.2(19) | 40.6(26) | 21.4(3) | 36.4(4) |
| 종사자의 시설운영 참여기회 확대 | 4.3(5) | 14.6(6) | 6.3(4) | 28.6(4) | - |
| Л | 100.0(118) | 100.0(42) | 100.0(66) | 100.0(14) | 100.0(11) |

자료: 김재엽 외(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p. 515,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 폭력 실태조사", p. 788, p. 835.

주: "매우 시급함"으로 응답한 비율임,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됨.



자료: 김재엽 외(2010).

주: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됨.

〈그림 Ⅲ-9〉 종사자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의 시급성

Ⅲ.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 31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기타 고무환경 보수교육 3.5% 직원충원 12.4% 지원충원 6.1%

자료: 김승권 외(2007), 이미정 외(2008), p. 183.

〈그림 Ⅲ-10〉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를 위한 개선점

현장에서 Pay는 낮고 그 고학력자가 낮은 Pay를 받고 일하는데 업무량은 많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아지잖아요. 실제로 여성부 평가 나와서 근무기간이 짧은 것을 문제 삼아요. 참 아이러니해요(D-71).

저희들이 정부 보조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시설하고는 차이가 더 나요... 채용조건이나 연봉을 면접과정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자기가 근무를 안 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면접은 몇 번 했지만, 채용을 못 한부분이 있고요... 상담은 좋은데. 회계니 행정을 담당하는 간사가 있고 상담원은 상담만 하기를 원해요... 지방으로 갈수록 가정폭력상담소가 평안하게 상담만 하면 되지 하고 오셨다가 근무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접는 경우도 꽤 됐었어요. (K-71)

밑에 사람을 끊임없이 바꿔야하는 상황이에요. 아까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젊은 세대들이 못 견디고 나가요. 우리같이 일이 몸에 베여서 10시에 퇴근하든 11시에 퇴근하든 이게 뭐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가보다 하지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쉼터에서 주말수당을 줘야 나와 할 거예요. (O-31)

상담원이 100만원정도 4년제 나와 가지고... 그런[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구비한] 상담원이 그럼 100만원 받고 상담소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전망이 있나 하고 옵니다. 와서 일을 하면서 당장 눈으로 보기에 자기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오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르쳐서 일 할만 하면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래서 4년제 말

고 전문대 정도 나온 사람을 채용해서 쓸까하고 전문대 나온 사람 채용했어도 내가 너무나 양에 안 차는 거예요. (M-72)

교육받는 사람이 상담원으로 투입될 때 급여나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있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일하다가도 1-3년 후면 모두 떠난단 말이죠. (A-75)

2010년 실태조사에 나타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자. 종사자들은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정보, 기술, 전문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담이나 지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렵다는 비율이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63.7%로 높게 나타났다. 심리상담의 기술 부족으로 인한어려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 59.8%, 가정폭력 보호시설 68.3%, 성폭력지원지설 53.1%, 의료나 법률 등 전문적 영역의 정보 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 52.2%, 가정폭력 보호시설 53.7%, 성폭력 지원지설 60.6%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 56.6%, 가정폭력 보호시설 81.6%, 성폭력 지원지설 73.1%로 나타났다. 앞에서열거한 어려움의 종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종사자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에서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보완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외 직무의 과중함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표 Ⅲ-9〉 종사자가 당면한 어려움의 내용

(단위: %(명))

| 구분 |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보호시설 |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 보호시설 | 여성긴급 전화 1366 |
|------------------------|-------------|--------------|------------|-------------|-----------------|
| 상담 및 지원의 전문성 부족 | 35.4(40) | 63.7(22) | 38.8(38) | | 0.0(0) |
| 심리 상담의 기술 부족 | 59.8(67) | 68.3(28) | 53.1(52) | | 40.0(4) |
| 의료, 법률 등 전문적 영역의 정보 부족 | 52.2(59) | 53.7(22) | 60.6(60) | | 20.0(20) |
| 직원들 간의 갈등 | 8.4(8) | 13.9(5) | 12 | .3(11) | 10.0(10) |
| 과중한 업무 | 48.1(51) | 65.0(26) | 57 | .3(55) | 30.0(3) |
| 휴일근무교대의 어려움 | 27.2(16) | 82.9(34) | 44 | .0(26) | 9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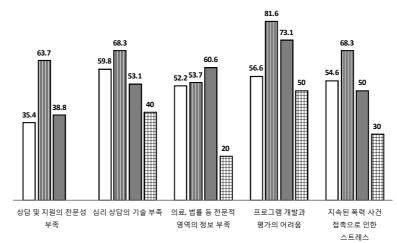
Ⅲ.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 33

| 구분 |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보호시설 |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 보호시설 | 여성긴급 전화 1366 |
|------------------------|-------------|--------------|------------|-------------|-----------------|
| 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 | 30.5(18) | 82.9(34) | 49 | .1(28) | 70.0(7) |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어려움 | 56.6(60) | 81.6(31) | 73. | .1(68) | 50.0(5) |
| 외부시설 연계의 어려움 | 20.4(22) | 52.5(21) | 25. | .5(25) | 10.0(1) |
| 지속된 폭력 사건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 54.6(60) | 68.3(28) | 50.0(48) | | 30.0(3) |
| 계 | 100.0(113) | 100.0(41) | 100 | .0(98) | 100.0(10) |

자료: 김재엽 외(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p. 517,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 폭력 실태조사", p. 818, p. 863, p. 903.

주: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임,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됨.

(단위: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자료: 김재엽 외(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p. 517,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 폭력 실태조사", p. 818, p. 863, p. 903.

주: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임,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됨.

〈그림 Ⅲ-11〉 종사자가 당면한 어려움의 내용

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임금

앞에서도 보았듯이 현장의 종사자들 사이에서 임금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

다. 피해자 지원기관별로 보았을 때, 이러한 욕구는 가정폭력 지원시설과 성 폭력 지원시설에서 가장 높다. 아래 표에는 2010년 기준 여성폭력 피해자 지 원기관 종사자 급여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성매매 관련 지원시설에 비해 성 폭력과 가정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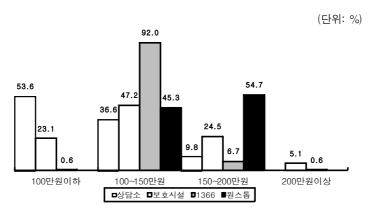
〈표 Ⅲ-1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급여 등 현황

(단위: 원)

| | 구분 | 연간 급여 |
|------------------|------------------------------|------------------------------------|
| 성폭력 | 보호시설 | 시설장: 18,954,000 종사자: 14,797,920 |
| 0 1 4 | 상담소 | 소 장: 18,954,000 상담원: 14,797,920 |
| 가정폭력 | 보호시설 | 시설장: 18,081,800 종사자: 14,093,500 |
| /18숙덕 | 상담소 | 시설장: 18,051,800 종사자: 14,093,500 |
| 성매매 |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 22,150,000 |

자료: 여성가족부. 2011년. 내부자료.

2007년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종사가 급여 분포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 원스톱 종사자의 임금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급여분포는 100만원이하와 100-150만원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보호시설은 상담소에 비해 급여분포가 조금 더 높은 임금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비해서는 1366의 급여수준이 더 낫고, 1366에 비해서 원스톱의 급여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성 폭력실태조사" 재가공, 이미정 외(2008), p. 114.

〈그림 Ⅲ-1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 비율 비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임금을 여타 사회복지 분야 자격소지 자와 비교해 보자. 아래 제시된 표는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OES) 자료에 근거한 사회복지분야 자격취득자의 임금 수준이다(박종성 외, 2010).3) 앞에서 제시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연간급여를 월급여로 환산해서 비교해보자.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는 120여만원 수준인데, 이는 사회복지사 173.5만원과 상담심리사 150만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관련시설 소장이나 시설장의 급여는 150여만원 수준으로 상담심리사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평균보다 낮다. 반면, 성매매관련 시설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185만원 수준이어서 사회복지사 평균급여보다 조금 높다.

^{3) &#}x27;자격취득자' 분석에서 자격별로 표본의 수가 소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 는 현장의 급여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박종성 외, 2010).

〈표 Ⅲ-11〉 사회복지 분야 자격별 급여 수준

| 직무구분 | 자격명 | 월평균 임금(만원) |
|----------|--------|------------|
| | 사회복지사 | 173.5 |
| 시청보기 | 상담심리사 | 150.0 |
| 사회복지 | 요양보호사 | 109.4 |
| | 청소년지도사 | 350.0 |
| 기타사회복지 | 운동처방사 | 300.0 |
| | 호스피스 | 20.0 |

자료: 박종성 외(2010), p. 106.

- 주: 1. 본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8차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임. 단, 제시된 자격의 월평균 임금은 설문의 응답자 수가 30인 이하인 경우가 많은 관계로 현실에서의 임금 수준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2. 산업중분류상 '87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료에 한함.
 - 3. '사회복지사' 자격에는 '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 사3급',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복지사1급', '노인복지', '케어복지사'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음.
 - 4. '요양보호사' 자격에는 '1급노인요양보호사자격증', '1급노인요양보조사자격증' 이 포함되어 있음.

〈표 Ⅲ-12〉 시설유형별 월평균 보수수준

(단위: 원, 명)

| 주요시설유형 | 평균 | 빈도 | 백분율 |
|------------|-----------|--------|--------|
| 아동생활시설 | 1,809,361 | 4,798 | 5.83% |
| 아동이용시설 | 1,625,011 | 755 | 0.92% |
| 노인생활시설 | 1,740,343 | 29,317 | 35.65% |
| 노인이용시설 | 1,727,413 | 11,221 | 13.64% |
| 여성생활시설 | 1,989,753 | 726 | 0.88% |
| 여성이용시설 | 1,568,281 | 799 | 0.97% |
| 부랑인/노숙인시설 | 1,913,013 | 609 | 0.74% |
| 자활/노숙인이용시설 | 1,625,157 | 1,722 | 2.09% |
| 장애인생활시설 | 1,726,381 | 12,598 | 15.32% |
| 장애인이용시설 | 1,800,279 | 12,092 | 14.70% |
| 정신보건생활시설 | 1,919,155 | 3,083 | 3.75% |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8), "2008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연구", p. 17.

한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 행한 2008년 연구에서 사회복지 시설유형별 급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는 호봉이나 직군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유형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월평균보수이다. 시설유형별 보수 중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에 해당되는 여성이용시설 종사자 보수가 1,568,281원으로 다양한 시설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임금이 여타 유사 사회복지 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장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시작된 최초 피해자 지원 단체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유지되었다. 이후 정부지원이 제공되면서, 종사자들의 지위는 정기적 임금이 제공되는 '직업'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전에 이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법을 제정을 하고, 상담소와 시설을 만들었던 저희 00000가 그 때 일을 할 때에는 운동, 활동가로서의 이런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에 대해 부분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활동가이기 때문에 활동가로 그냥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급여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벌써 다 나갔을 거예요. (L-31)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41

48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1.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

가. 자격제도의 종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직무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데,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해당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이동임외, 2006). 외국에서는 "교육 또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거나, 검정이나시험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으로 개인이 직업에 들어가서 발전하기 위한 요구조건"으로 정의되고 있다(Tissot, 2004). 자격제도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주도적이어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나 개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자격종목을 신설, 관리, 운영하고 있다(이동임 외, 2006).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격제도의 발달이 미비하다. 일부 민간자격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과절차를 거치면 국가가 공인하는데, 민간자격의 능력평가 기준이나 자격부여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동임 외, 2006).

자격의 종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법제처, 2010).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기초하여 관리 · 운영되는데, 국가자격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 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자격기본법 제1조, 법제처, 2010).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나눠지는데, 공인민간자격은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질 높

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가치를 향상시키는 데"목적을 두고 있다(박종성 외, 2008). 등록민간자격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인생단계별 개인의 커리어 설계를 지원하는 자격을 만드는데 있어서민간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종성 외, 2008).

다양한 종류의 민간자격이 신설되고 있지만, 이것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의심되고 있다. 일부 민간자격의 경우 국가공인 절차를 통해서 자격관리, 운영역량, 신설자격에 대한 타당성이 점검되지만, 자격부여기관의 전문성이나 자격의 질과 관련하여서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된다(이동임 외, 2006). 국가 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관리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이수한 학습결과와 신설자격을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시키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된다(이동임 외, 2008). 이런 이유로 자격관리 기관의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설 자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운영계획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자격을 보면 동일한 자격에 대해 개별 교육기관이나 단체가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병원서비스코디네 이터' 자격은 10여개 이상의 기관들이 유사한 자격명칭으로 등록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심리상담사'나 '베이비시터' 자격종목은 5 개에서 20여개의 기관들이 유사한 자격을 운영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이들 자격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자격부여 과정을 관 리하고 이들 통해 자격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조정윤 외, 2010).

나.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서비스산업에 근거하여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종목 분포를 살펴보자(참조 <표 IV-1>). 2010년 서비스산업분야에는 총 1,504개 자격종목이 있는데, 이중 국가기술자격이 131개, 개별법의 국가자격 123개, 민간자격 1,250개가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윤정 외, 2010).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 자격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인데, 서비스 분야 자격의 80.2%와 사회서비스업 자격의 91%가 민간자격이기 때문에자격제도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애

로사항이 많다(조윤정 외, 2010).

〈표 Ⅳ-1〉한국표준산업분류별 서비스산업의 자격종목 수

|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 | 민간자격 | 합계 |
|------------|----------------------|-----|-----|-------|-------|
| | K 금융 및 보험업 | 0 | 3 | 11 | 14 |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0 | 4 | 5 | 9 |
| 사업 서비스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5 | 19 | 138 | 172 |
| NI-11-11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 8 | 4 | 34 | 46 |
| | 소계 | 23 | 30 | 188 | 241 |
| | G 도매 및 소매업 | 10 | 1 | 2 | 13 |
| | l 숙박 및 음식점업 | 15 | 4 | 4 | 23 |
| 개인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1 | 7 | 150 | 158 |
| 서비스업 | S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 24 | 0 | 18 | 42 |
|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 0 | 0 | 0 | 0 |
| | 소계 | 50 | 12 | 174 | 236 |
| | H 운수업 | 0 | 23 | 6 | 29 |
| 배분 서비스업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 49 | 4 | 71 | 124 |
| NI-11-11 | 소계 | 49 | 27 | 77 | 153 |
| |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 | 32 | 112 | 153 |
|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0 | 4 | 4 | 8 |
| 사회 서비스업 | P 교육 서비스업 | 0 | 18 | 695 | 713 |
| 11 — 11 | U 국제 및 외국기관 | 0 | 0 | 0 | 0 |
| | 소계 | 9 | 54 | 811 | 874 |
| | 합 계 | 131 | 123 | 1,250 | 1,504 |

자료: 박종성 외(2010), p. 30.

사회서비스 분야 중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2010년 9개의 국가 기술자격과 32개의 개별법상의 국가자격, 112개의 민간자격이 있다.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은 보건·의료분야 1개 종목과 사회복지분야 2개 종목 등 총 3개이며, 나머지 109개 자격은 순수 민간자격이다(박종성 외, 2010).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 성격의 자격 비중이

44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높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간자격 종목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4)

〈표 Ⅳ-2〉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

(단위: 개)

| 서비스분이 | 구분 : | 국가기술자격 | 개별법의 자격 | 민간 | 자격 | 합계 |
|------------|---------|--------|---------|-----|-----|-----|
| | | | | 공인 | 1 | |
| | 보건・의료 | 5 | 26 | 비공인 | 34 | 66 |
| | | | | 소계 | 35 | |
| 1 | | | | 공인 | 2 | |
| 사회 서비스업 | 사회복지 | 4 | 6 | 비공인 | 75 | 87 |
| | | | | 소계 | 77 | |
| | | | | 공인 | 3 | |
| | 계 | 9 | 32 | 비공인 | 109 | 153 |
| | | | | 소계 | 112 | |

자료: 박종성 외(2010), p. 93.

4) <표-각주-1>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자격의 분류 및 구분

| , u = | , H 2 | 자격분류 | | |
|----------|-----------------|--|-----------|--|
| 중군뉴 | 소분류 | 종목 | 자격구분 | |
| | | - | 국가기술자격 | |
| | 사회 | - | 개별법의 국가자격 | |
| | 보장 | 건강보험사무관리사, 건강보험청구심사자격증, 보험심사평가사, 사회보험사, 전문보험심사청구사 등 | 민간자격 | |
| | | 소비자전문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 국가기술자격 | |
| |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건강가정사, 청소 | 개별법의 | |
| | | 년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 국가자격 | |
| 사회 복지 | 사회 복지 서비스 | 발달심리자격증, 발달장애상담사, 발달진단평가사, 수화통역사, 재 활레크리에이션전문가, 재활태권도전문가, 점역교정사자격증, 특 수교육경영사, 베이비시터,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아동발달상담사, 아동상담사자격증, 원예복지사, 유아비디오증후군 재활전문가, 유 아아동레크리에이션, 교정교화상담사, 노인복지체육, 노인복지레 크리에이션, 실버재활운동사, 기정행복설계사, 가족상담사, 다문화 가정복지상담사, 부모사랑양육사, 성폭력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독서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분석사, 심리재 활전문가, 임상미술심리사, 전문상담사, 스트레스관리사, 웃음코디 네이터, 사회복지모금전문가, 사회서비스관리사, 생활안전관리사, 자원봉사관리사, 행복컨설턴트, 호스피스전문봉사자 등 | 민간자격 | |

자료: 박종성 외(2010), p. 95.

다. 사회서비스 분야 검정실시 기관별 자격종목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을 검정하고 운영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별법상의 국가자격은 자격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자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총 21개의 자격종목에 대해서 검정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개, 각 시·도지사에서 1개 종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총 3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대부분의 자격종목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안마사와 정신보건간호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각 시·도에서 자격 검정을 관리하고 있다. 공인민간자격은 대한행정관리자협회에서 "병원행정사" 1개의 자격종목에 대해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보건의료 분야와 달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해당 부처가 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사회복지사1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시험을 검정·관리하고 있다.

라.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검정 방법 및 응시자격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검정과 응시자격을 살펴보자. 사회복지사의 경우를 보면 1급 자격에서는 필기시험을 검정방법으로 택하고 있고, 2급과 3급은 교 육과정 이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중 유일하게 필기와 면접을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표 IV-3〉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 분야 | 자격의 구분 | 검정실시 기관(수) | 자격종목 |
|------------|---------------|----------------------|--|
| 보건ㆍ | 국가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21)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지·보조기기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임상병리사 |
| 의료 | | 보건복지가족부(2) | 안마사, 정신보건간호사 |
| | | 각 시·도지사(1) | 간호조무사 |
| | 국가기술 | 한국산업인력공단(3) |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
| | 공인민간 |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1) | 병원행정사 |
| | | 한국산업인력공단(1) | 사회복지사1급 |
| | 국가 | 보건복지가족부(4)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건강가정사, 요양보호사 |
| 시청 | | 한국청소년 상담원(1) | 청소년상담사 |
| 사회 · 복지 | 국가기술 | 한국산업인력공단(6) |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시2급, 소비자전문상 담사1급, 소비자전문상담시2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시2급 |
| | 공인민간 | (사)한국농아인협회(1) | 수화통역사 |
| | <u>ರಬಬ</u> ಬ್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1) | 점역·교정사 |

자료: 조정윤 외(2010), p. 27.

자격의 검정방법과 응시자격은 자격종목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국가 기술자격의 경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 대부분이 필기와 실기시험을 차례로 치르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개별법상의 국가자격들은 그 특성에따라 검정유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및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필기시험만 치르게 된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 '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과 '정신보건임 상심리사1급'의 경우는 별도의 자격검정 시험을 치르지는 않지만, 응시요건에 "관련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만이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매우 엄격한 자격을 요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경우는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경력 및 급수에 맞는 학위를 보유한 사람에 한하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검정방법으로 필기와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표 Ⅳ-4〉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 | | | 검정방법 | | | |
|----|------------|------|------|----|----|------------|
| 분야 | 자격종목 | 구분 | 필기 | 실기 | 면접 | 교육과정 이수 |
| | 직업상담사1급 | 국가기술 | 0 | 0 | × | × |
| | 직업상담사2급 | 국가기술 | 0 | 0 | × | × |
| |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 국가기술 | 0 | 0 | × | × |
| |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 국가기술 | 0 | 0 | × | × |
| | 사회복지사1급 | 국가 | 0 | × | × | × |
| | 사회복지사2급 | 국가 | × | × | × | 0 |
| 사회 | 사회복지사3급 | 국가 | × | × | × | 0 |
| 복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국가 | × | × | × | 0 |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국가 | × | × | × | 0 |
| | 건강가정사 | 국가 | × | × | × | 0 |
| | 요양보호사 | 국가 | 0 | 0 | × | × |
| | 청소년상담사 | 국가 | 0 | × | 0 | × |
| | 점역・교정사 | 공인민간 | 0 | 0 | × | × |
| | 수화통역사 | 공인민간 | 0 | 0 | × | × |

자료: 박종성 외(2010), p. 101, 조정윤 외(2010), p. 31.

마.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자격제도 검토에 추가하여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살펴보자. 미국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담당분야와 관련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박종성 외, 2010). 이들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및 배우자 학대, 실업, 직업기술의 부족, 재정적 어려

움, 심각한 질병, 무능력, 물리적 학대, 원치 않는 임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2004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총 56만여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2014년까지 전체 직업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종성 외, 2010).

미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취득 이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 후 필기와 구술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전문적 수준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쌓아야 한다.

〈표 Ⅳ-5〉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분야 | 직무명 | 관련 자격명 | 자격 응시수준 | 자격부여기관 |
|----------|-------------------------------|---|--|---|
| | | 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DCSW) | • 석사학위 이상 • 5년 이상 실무 경험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 사회 복지 | | Member, Academy of Certified Baccalaureate Social Workers | • 학사학위 이상 • 2년 이상 실무 경험 | Academy of Certified Baccalaurea the Social Workers |
| 국시 | Social Workers | Member of the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 • 석사학위 이상 • 2년 이상 실무 경험 |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ACSW) |
| | School Social Work Specialist | • 석사학위 이상 • 2년 이상 실무 경험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

자료: 박종성 외(2010), p. 190.

2.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가. 심리상담관련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는 상담원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 있다. 이들의 직무가 상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상담은 이들 업무 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원의 직무와 유사한 분야인 심리상담 분야의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을 검토해보자. 심리상담과 관련된 자격검정기관은 다양하고 운영기관별로, 응시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검정과목이 달라 민간자격에 대한 질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기관별로 응시자격이 다르고, 교육요건에 차이가 있으며, 자격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의 활용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개선방안으로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자격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노동시장에서의 혼란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학생의 심리적 문제, 진학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한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으로 1급과 2급으로 나눠지고 있다(조정윤 외, 2010).

상담교사의 직무영역은 다양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학습, 진로, 가정, 심리적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담교사의 직무영역을 학습, 진로, 정서지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전문영역별 상담교사를 선발하고,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표 Ⅳ-6〉 전문상담 관련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 등급 | 응시자격 |
|----------------------|--|
| 1급 전문 상담 교사 |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 2급 전문 상담 교사 |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 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을 가진 자 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 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자료: 조정윤 외(2010), pp. 191-192.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와 유사한 민간자격으로 진로 및 경력지도 관련 자격, 심리지도 관련 자격, 자기주도학습 관련 자격, 상담 관련 자격 등이 있지만 자격종목과 자격관리기관에 따라 응시자격 기준이 상이하다. 자격증 응시 자 격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자격 취득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자격 과의 직무영역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래 표에는 전문상담관련 민간자격과 응시자격을 소개하고 있다. 아래 소개되는 상담관련 자격 중 검정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청소년 진로 코칭 지도사, 커리어코치, 상담심리사, 자기주도 학습지도사의 응시자격을 살펴보자(조정윤, 2010). 이들 자격의 응시자격은 분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타의 경우와 달리 상담심리사의 경우 학회 차원에서 응시자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한다. 1급 상담심리전문가는 석사 및 박사의 상담관련 학위에 추가하여 교육수준별로 차등적인 상담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상담심리사의 경우는 학회라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상담경력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실습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자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표 Ⅳ-7〉 전문상담 관련 민간자격의 영역 분류 및 응시자격

진로지도 영역:

청소년진로코칭지도사, 커리어코치, 인재파견지도사자격증, 직업상담사, 진로상담사 등

정서지도 영역:

가족복지상담사, 가족상담사, 가족상담지도사, 교육상담사, 놀이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독서심리 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음악지도사, 미술정서인지상담사, 발달심리자격증, 발달장애상담사, 상담매니저, 상담사, 상담심리사, 성폭력상담사,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심 리상담사자격증, 심리장애상담사, 심리재활전문가,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아동 발달상담사, 아동상담사자격증, 음악심리지도사, 인성·심리상담사자격증, 임상미술심리사, 전문상 담사 등

학습지도 영역:

두뇌운동전문지도자, 멘토링지도사, 방과후명품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자격증, 방과후지도사, 방과후학교지도사, 브레인트레이너, 사이버학습코치, 유아및아동교육지 도사, 아동학습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기주도학습코치, 학습CARE교육사, 학습전전문 코치, 학습코치 자격증, 아이브레인영재지도사, 영재전문지도사자격증 등

\mathbb{N} .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ullet 51

| 분야 | 민간자격종목 | 응시자격 |
|----------------|----------------|--|
| 진로 상담 | 청소년진로 코칭지도자 |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수준 혹은 고등학교졸업 후 사회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진로지도에 상당한 능력을 갖춘 자, 노동부 및 산화관련기관 또는 유사한 기관·단체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 한 자, 본 기관 훈련원에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 한 자 |
| 영역 | 커리어코치 | <3급> 20시간 이상의 커리어코치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2급> 20시간 이상의 커리어코치 고급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1급> 24시간 이상의 커리어코치 강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 정서 상담 영역 | 상담심리사 | <1급> -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과 본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 대학의 상담전공 부교수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의 상담전공자의 경우,자격검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특별전형 할 수 있다. <2급>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 학습 상담 영역 |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 <1급> - 본 협회가 지정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증을 받은 자 -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본 협회가 지정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증을 받은 자 - 3급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3급> - 본 협회가 지정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증을 받은 자 |

자료: 조정윤 외(2010), pp. 193-194.

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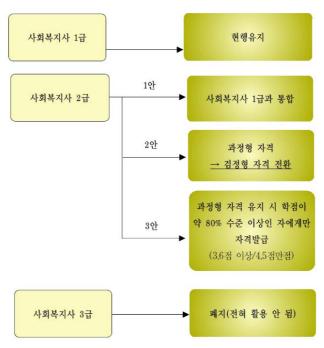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2003년부터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점은행제 이수자에게도 자격기준을 확대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자격증 교부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과목이수만으로 자격증을 발급받는 2급 사회복지사의 수가 2000년 중반부터 6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급 자격소지자는 2009년 22만명을 넘어섰다(홍선미, 2009). 2급 자격은 1급을 보조하는 수준의 자격으로 인식되는데, 자격소지자의 양적 팽창으로 사회복지인력 전체의 질적 하락이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홍선미, 2009). 연간 6만여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2급과 3급은 교과목 이수만으로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교육의 부실성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조성철, 2009; 홍선미, 2009). '무분별한 인력양성 과정의 난립'과 '과다한 인력배출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방하고 있다(홍선미, 2009). 매년 배출되는 예비 사회복지사의 수와비교해 볼 때 기관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유사학과들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홍선미, 2009).

문진영(2009)은 사회복지사 제도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인력 수요와 공급의 괴리, 사회복지교육과 사회복지 현장의 괴리, 자격증 제도와 직무표준화의 괴리, 자격증 시험제도와 현장 실무능력의 괴리, 이론의 발전과 표준교과목 제도의 괴리가 그것이다(문진영, 2009). 사회복지사 2급과 3급 자격은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자격이수 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격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사회복지사 3급은 직무 전문성이 부족하며 취업가능성이나 활용성이 저조하여 대다수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사회복지관련 협회나 단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사회복지분야 자격은 직무 전문성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종성 외, 2010).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부실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이기영, 2009; 이봉주, 2009; 조정윤 외, 2010; 홍선미, 2009).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살펴보자.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1급에 비해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을 통합하자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2급을 존속시킨다면 과정형 이수자격에서 시험을 보는 검정형 이수 자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과정 이수 형태를 지속해야 한다면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하여 4.5점 만점에 3.6점 이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자격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 3급은 현장에서 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박종성 외, 2010).



자료: 박종성 외(2010), p. 257.

〈그림 Ⅳ-1〉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안(Ⅰ)

이러한 논의에 추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강흥구, 200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200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전문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응시자격, 시험방법, 경력인정, 수행직무 등에 대하여 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이봉주(2009)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3가지 차원에서 주 장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강화되 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문제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일반사회복지 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구비하고 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이봉주, 2009). 이러한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 하여 그에 맞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는 관련 자격자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어서,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전문직의 위상을 제고하고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화 에 요구되는 교육인증제 도입, 사회복지실습교육의 강화, 교육분야의 전문화 가 전문사회복지사 도입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과 더불어 교육체계, 인력양성체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영(2009)은 현행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을 폐지하고 3단계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응시자 격은 전문대 이상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 제한하자고 한다(이기영, 2009). 그는 준사회복지사 시험,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시험, 전문사회복지 사(professional social worker)시험 별로 응시자격과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무는 전문사회복지 사 자격자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전문사회복지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Ⅳ.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 55

〈표 Ⅳ-8〉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안(Ⅱ)

| | 직무영역 | 주안점 |
|---------|---|---|
| 준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업무의 보조, 의뢰 이유 및 기본 정보 파악, 정보제공, 생활지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행정문서 작성 및 관리, 시설안 전관리 및 공동 물품관리 등 | 클라이언트 생활지도 및 케어활동/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문서작성, 안전관리, 물품관리 |
| 사회복지사 |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사정,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준 사회복지 사의 관리, 업무 수행도 평가, 상담, 등을 주 요 업무로 규정 | |
| 전문사회복지사 | 영역별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퍼비젼 제공과 실습생 지도책임, 지역사회욕구분석, 기관서비스의 장기적 기획 등 | 전문프로그램개발평가/수퍼비젼 과 실습지도/ 분석과 장기기획 |

자료: 이기영(2009), p. 52.

'준사회복지사' 자격 시험과목은 현행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에서 행정, 정책, 법제, 조사 과목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회복지실천과 케어서비스관 련 과목의 배점을 증가시킨다(이기영, 2009).5) '사회복지사' 자격은 현재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따라 부여한다. '전문사회복지사' 시험은 전문간호사 시험에서처럼 '기본응시자격(사회복지사 자격)'에 '현시점에서의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5년 경력과 보수교육이수)'을 갖춘 사람에게 시험(필기, 실기)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이기영, 2009).

5) <참고> 현행 사회복지사 1급시험 과목과 배점

| 과목 | 영역 | | | |
|--------------------|--|--|--|--|
| 사회복지기초 (60점)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0점), 사회복지조사론(30점) | | | |
| 사회복지실천 (90점) | 사회복지실천론(30점), 사회복지실천기술론(30점), 지역사회복지론(30점) | | | |
| 사회복지정책과제도 (90점) | 사회복지정책론(30점), 사회복지행정론(30점), 사회복지법제론(30점) | | | |

자료: 이기영(2009), p. 52.

V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 1. | 종사자 | 자격부여 현황 | 59 |
|----|-----|-----------------|----|
| 2. | 종사자 | 보수교육 현황 | 83 |
| 3. | 종사자 |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문제점 | 95 |

1. 종사자 자격부여 현황

가. 종사자 자격관련 법적 근거

1) 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여기서는 성폭력피해 상담·보호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과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2011.1.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서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제19조), 보수교육의실시(제20조)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해서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게 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서 성범죄로 형을 집행하고 나서 10년동안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 입법취지를 동 법에서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일반기준, 개별기준, 교육과정의 세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제7조 별표 1). '일반기준'(제1호)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상담원 등 종사자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상담원 등의 종사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

^{6) 1994.4.1}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4.15 시행)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2011.1.1 시행)로 분리하여 제정되었다.

60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법인 또는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 인이나 단체에서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 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달리 정할수 있다.

'개별기준'(제2호)은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장, 상담원 등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기준이다.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장애인관련 단체·시설에서는 2년 이상을 근무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관련단체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는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상담원 자격기준(개별기준)

| 구분 | 자격기준 |
|-----------------------|---|
|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 통합지원센터의 장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 61

| 구분 | | 자격기준 |
|-------------|-----------|---|
| | 총괄 팀장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통합지원센터에 | 임상 심리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 또는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 후 병원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받은 사람 |
| 근무하는 종사자 | 심리 치료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심리학, 아동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간호사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전문 상담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행정 | 예산 및 회계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1.

'교육과정(제3호)'은 교육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소양분야, 전문분야 I, 전문분야 II, 전문분야 II으로 되어 있다.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은 이전에는 64시간 과정이었으나 100시간 과정으로 이수시간이 상향조정되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1, 2011.1.1 시행). 가정폭력의 교육이수시간이 100시간인 것을 감안하여 이수시간을 통일한 것이다.

62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표 V-2〉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상담원 교육분야

| 교육 분야 | 교육과목 | 이수시간 |
|----------|--|------|
| 소양분야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 여성인권과 폭력 | 15 |
| 전문분야 I |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의료지원 실무 | 30 |
| 전문분야 II |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이론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 35 |
| 전문분야 III |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등 | 20 |
| 총계 | | 100 |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가정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라 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관련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그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제8조의 2 제1항).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상담원의 요건은 다음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서,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 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되어 있다(동 법 제8조의 2 제2항, 동 시행규칙 제9조). 여기서 가정폭력 상담원의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중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을 추가하였다(동 시행

규칙 제9조 별표3, 2010.11.17 개정). 성폭력상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가정폭력업무 경력은 3년을 요구한 반면에, 장애인 단체 경 력은 2년을 요구하고 있다.

〈표 V-3〉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구분 | 자격기준 | |
|-----------------------|--|--|
|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
| 긴급전화센터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 |
|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
|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 1.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 |

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별표3.

64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는 성폭력, 성매매와는 달리 교육훈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006.4.28 동 법 제8조의 3 신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동 법 제8조의 3 제1항),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밖의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제2항).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 이에 따라 시행규칙은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관련 분야 교과목의 3년 이상 강의경력자, 의사, 변호사, 공무원, 상담원 5년 이상 경력, 관련 분야 5년 이상연구경력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동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표 ∀-4〉가정폭력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 강사의 자격기준

| | 기준 |
|--|---|
| 교육 훈련 시설의 시설 기준 |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조명시설 및 그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교육 훈련시 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 기준 |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또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동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교육분야는 소양분야(15시간), 전문분야 I (30시간), 전문분야Ⅱ(35시간), 전문분야Ⅲ(20시간)으로 총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소양분야는 복지, 여성, 인권, 가족을, 전문분야 I 은 가정폭력관련 법을, 전문 분야Ⅱ는 상담기법을, 전문분야Ⅲ은 실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강좌당 수강생은 70명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 수강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수강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 시행규칙 제16조). 또한 강사 1명이 3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인적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Ⅴ-5〉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 교육분야 | 교육과목 | 이수시간 |
|---------|---|------|
| 소양분야 | - 가족복지 및 정책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여성인권과 폭력 | 15 |
| 전문분야 l | 가정폭력의 이해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법률구조실무법적 절차 및 대응의료지원실무 | 30 |
| 전문분야II | - 상담심리개론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대상별 상담과정 | 35 |
| 전문분야III | -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 역할연습 | 20 |
| 총계 | | 100 |

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3) 성매매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성매매관련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등에 관해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함),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동 시행령 제5조 별표 1, 2011.3.30 개정). 또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은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시행규칙 제5조별표2, 2010.8.3 개정), 종사자수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Ⅵ-6〉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 종사자 | 자격기준 | |
|--------------|---|--|
| 중앙지원센터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관련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폭력 방지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폭력 방지관련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성인권 또는 여성폭력 방지관련업무에 9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0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팀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지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사회학·사회복지 관련 학사 또는 전 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시설 또는 이주여성노동자 관 련 단체·시설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 67

| 종사자 | 자격기준 |
|-----|---|
| 팀원 | 1.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시설 또는 이주여성노동자 관 련 단체·시설에서 상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5조 별표 1.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해서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일 반기준'에 의하면,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사무국장·상담원 및 직업훈련 교사는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여성가족부장 관으로부터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종사자 자격기준의 개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Ⅵ-7〉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개별기준)

| 직종별 | 자격기준 | |
|------------------|--|--|
|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사무국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상담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68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 직종별 | 자격기준 | |
|--------|--|--|
| |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
| 직업훈련교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 사무지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자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제2호.

성매매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은 소양분야, 전문분야(이론), 전문분야(실무),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1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동 시행규칙 2005. 6.23 시행). 여기서 교육기간은 4주로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표 Ⅴ-8〉성매매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 분야 | 교육과목 | 이수시간 |
|------|---|-------|
| 소양분야 |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학 | 10시간 |
| 전문분야 |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성매매에 대한 이해 | 15시간 |
| (이론) | 자활 관련 법·정책 여성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해 | 10시간 |
|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ㆍ정서적 상황 등) | 10시간 |
| 전문분야 |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의료지원 실무 여성주의 상담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 | 25시간 |
| (실무) | 상담원 소진 예방 상담원의 윤리 및 자세 | 5시간 |
| | 상담사례 연구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 10시간 |
| | 여성 자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무 | 10시간 |
| | 행정실무(문서작성, 회계 등) | 5시간 |
| 실습 | 관련 기관 방문과 성매매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서의 현장실습 | 50시간 |
| 총계 | | 150시간 |

자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별지.

나.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현황

1) 성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관련 현황

(1) 성폭력 관련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현황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몇몇의 성폭력관련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자. 피해자 치유를 위한 상담지원자 교육 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05)은 첫째, 상담지원자의 심화 교육 전문화·체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기대되는 역량강화모델의 목표는 상담지원자가 피해자들의 맥락을 분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인의 맥락에 적합하며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유의 전략을 계획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상담지원자는 자신의 여성성, 섹슈얼리티, 성폭력 발생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점검하고 상담에 대한 기본 전제, 인권의식 등을 숙지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상담지원자의 소진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치유를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통해 상담지원자는 신체적, 정서적, 업무적으로 소진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 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뿐 아니라 상담지원자의 소진예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단 기적인 전문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상담지원자를 위한 여성주의 상담 수퍼비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성폭력 치유의 근본적인 전제는 성폭력 발생에 대한 성인지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여성주의 상담 수퍼비젼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뿐만이 아닌 상담지원자의 성폭력 발생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비판의식과 성별의식이 성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성폭력 피해의 효과적인 치유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상담원의 전 문성 강화를 강조한다.

위 연구에서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양성 교육시간이 64시간이었을 때 이 교육만으로 성폭력 상담원 교육이 끝나고, 그 이후의 공식적인 보수교육이나 심화 교육, 전문적인 프로그램 이수 교육 등이 없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 후 2010년 관련 법에서는 성폭

력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과 보수교육의 의무화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7) 성폭력상담원의 교육이수시간 확대에 따른 교육효과가 어떤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평가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폭력에 관한 전문, 심화교육 등의 법정화가 이루어졌지만 교육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것은 아니다. 성폭력 사건 지원과 전화상담 등에 치중한업무를 진행하면서 상담원들은 성폭력 상담, 치유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 전문 상담원들의 성폭력 이해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술치료 전문가 등의 경우도 성폭력에 대한 일정한 교육과 실습 이후에 성폭력 피해 치유 프로그램 등에 함께 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전길양 외, 2006 : 20).

한편 상담원 자격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정부는 그 동안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원 교육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상담원 자격 관리를 하고 있다. 상담원의 양적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으나 훈련내용에 대한 평가나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상담원의 전문화 및 체계화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폭력피해여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즉 위급한 폭력 상황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지 판단하고, 폭력피해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며, 폭력피해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연계기관을 발굴 ·관리하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은 다수의 상담원이 필요하며, 이런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내용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특히 무엇보다 상담원 교육에서는 성폭력은 몇 몇 운나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가부장제 문화의 산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는, 여성주의적 의식교육이 요구된다.

종합해 보면, 국내외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상담적 접근은 지속적으

⁷⁾ 최근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정에서 성폭력 상담원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것과, 상담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7조).

로 증가하고 있는 폭력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의 형태로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상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상담기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및 표준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길양 외, 2006 : 22).

(2) 성폭력 양성교육 사례

성폭력의 경우 여러 단체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보면, 2011.3.12 - 2011.5.21 매주 토요일 오전 09:00-12:00, 오후 13:00-19:00까지총 100시간을 진행하였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의 선착순이고, 교육비는 교재비, 중식비 포함하지 않고 350,000원이었다.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한 교육이수자에게는 이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가족부 인정)을 주게 된다.

또한 2011년 한국여성의전화 14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은 2011.6.20 - 2011.7.22 매주 월, 수, 금 10:00-17:00 7월 8-9일 숙박교육, 7월 13일 수요시위 포함 총 100시간이며, 교육내용은 여성학, 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이다. 교육비는 교재비, 숙박교육비를 포함하여 300,000원이었다. 본 교육의 90%이상 출석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음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 이수시간이 76시간으로, 100시간으로 바뀌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 준다. 이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상담실습은 상담실습 I, II로 구분하여 오후 4시간 정도 배치하고 있다. 상담소에서의 상담지원과정이 심리치료, 법률, 수사, 의료지원 등 상담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가 다양한데 2시간단위로 이루어지는 강의 등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법률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성폭력특별법 및 여성관련 법률해설 3시간과 법원참관이 전부이다.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실습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상담실습이라는 이름의 실습은 통털어 오후 한나절만 배정됨으로써 실습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는 성폭력의 경우 교육이수시간이 100시간으로 늘었고, 각교육기관에서는 상담원으로 배치되기 이전에 실제 상담소 등에서의 훈련과정

72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담원이 충분히 자신감있게 상담에 임할 수 있 도록 충분한 교육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Ⅵ-9〉 성폭력 상담상담원 양성교육 시간표

| | 2/28(월) | 2/29(화) | 3/1(수) | 3/2(목) | 3/3(금) | 3/4(토) |
|--------------------------|--|--|--|---|---|--|
| 오전 9:30 | 9:00~9:30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9:30~11:00 우리사회의 | 개강식 및 남, 여성으로서의 오리엔테이션 나 9:30~11:00 (분임토론) | | 상담이론 | 우리사회의 성문화 -윤가현교수 (전남대 심리학과) | |
| ~ 12:30 | 어당군제 11:00~12:30 여성과 가족 -김경신교수 (본회 회장,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 성의 과학 -이경희교수 (부산대 생물학과) | 3.1절 | -김수경강사 (전 호남대 강사) | 성심리 -윤가현교수 (전남대 심리학과) | |
| 오후 1:30 ~ 3:30 | 여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수애교수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 성의 과학II -이경희교수 | | 성폭력 비디오 감상 및 토론『피고인』 | 법원참관 | |
| ~ 5:30 | 여성과 사회복지 -서선희교수 (광주대 가정관리학과) | - (부산대 생물학과) | | -김삼숙(본회 성교육 강사) | | |
| | 3/6(월) | 3/7(화) | 3/8(수) | 3/9(목) | 3/10(금) | 3/11(토) |
| 오전 9:30 ~ 12:30 | 성폭력가해자 특성을 통한 성폭력 상담 -박미은교수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 성폭력피해 대응방안(정신과) -최영교수 (전남대 의대 정신과) | 성폭력 특별법 및 여성관련 법률해설 -박효숙 (본회 전 성폭력상담소장) | 남성의 성 -박광성교수 (전남대 의대 비뇨기과) | 유형별성폭력 상담사례연구II 직장내, 데이트, 스토킹, 음란물 -채숙희 상담부장 | 성폭력상담원의 자세와 역할 -염미봉(본회 성폭력상담소장) |
| 오후 1:30 ~ 3:30 | 여성과 사회(성의 문화적 이해) -김명혜교수 (전남대 인류학과) | 성과 성상담 -위경선상담원(광주 YMCA 청소년상담실) | 성폭력상담의 지원체계 및 지원사례연구 -김병숙(한국성 폭력상담소피해 자보호시설'열림 터'부장) | 성폭력 실태와 대책 -박효숙(본회 전성폭력상담소 장) | 상담실습 l | 13:00 수료식 |
| ~ 5:30 | 성폭력피해 대응방안 (산부인과) -오성택교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 | 성폭력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처리과정 -이광민검사 (광주지방검찰청) | 유형별성폭력상 담사례연구 I. 어린이, 친족, 청소년 -박정숙 강사 (본회성교육 강사) | 성폭력 위기상담 -염미봉(본회 성폭력상담소장) | 상담실습II | |

자료: 광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p.3

(3) 성폭력 양성교육 구요 분석

성폭력 양성교육에 대해 교육생들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자. 이를 위해 2006년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국의 성폭력 시설과교육훈련기관에서 종사하는 상담원을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7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70명의 일반적 특성은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40대가 37.9%, 20대가 30.3%, 50대가 19.7%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97.0%로 성폭 력상담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종사원이 소속된 기관은 성폭력상담기관이 80.9%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상담원이 50%, 소장이 3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성폭력상담 및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70%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오 프라인 강의가 80.7%로 대부분 교육 장소를 중심으로 종사원 교육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상담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그렇다 66.7%, 그렇지 않다가 17.5%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강의 실시 필요', '시설장의 사명감 부족', '근무 여건상 지속적인 교육의 어 려움', '교육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교 육기관은 여성단체 및 부설기관이 72.1%, 사회복지기관 및 부설기관 10.3% 의 순이었으며 종사기간은 1-3년 미만이 38.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 대졸 44.1%, 고졸 20.6%의 순이었다. 전공의 경우 사회복지가 5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담이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전길양 외, 2006 : 47). 성폭력상담원 양성 교육과 관련한 제안 사항에서 상담원들은 '상담원 교육 일원화 및 표준화와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9명 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론 중심보다 실무적인 교육'과 '교육시간 확대' 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명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서 '여성주의 시각이 있는 강사초빙'(1명), '상담실무없는 자의 상담소 개소 문제'(1명) 등이 있었다. 이

는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과 관련한 교육내용과 운영, 훈련 등의 교육과정에

서 전문화의 확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74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표 Ⅴ-10〉성폭력상담원 양성 교육 소감 및 제안사항

| 질문사항 | 구분 | 응답수(N%) |
|-----------------|------------------------------------|-----------|
| | 상담원 교육 일원화 및 표준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 선정 | 9명(45.0) |
| 교육 소감 및 제안사항 | 이론 중심보다 실무적인 교육 교육시간 확대 | 9명(45.0) |
| | 여성주의 시각이 있는 강사초빙 | 1명(5.0) |
| | 상담실무 없는 자의 상담소 개소 문제 | 1명(5.0) |
| | 20명(100.0) | |

자료: 전길양 외(2006), p.60.

주: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향후 희망하는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상담원들이 실제 상담에 대한 대처 능력과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높은 교육훈련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전길양 외, 2006 : 58-60).

〈표 Ⅵ-11〉 성폭력상담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 질문사항 | 구분 | 응답수(N,%) | | | |
|--------------|------------------------|------------|--|--|--|
| | 다양한 실제 상담 기법 및 유형별 상담 | 14명(43.7) | | | |
| | 법률 및 의료영역 | 5명(15.6) | | | |
| | 상담사례 및 토론 | 4명(12.5) | | | |
| 성폭력상담원 | 다양한 심리검사영역 | 2명(6.3) | | | |
| 보수교육 | 상담원의 자질 | 2명(6.3) | | | |
| 프로그램 | 보수교육의 단계별 교육 필요 | 2명(6.3) | | | |
| | 외국의 성폭력상담소 자격사항 및 운영사례 | 1명(3.1) | | | |
| | 반성폭력운동의 필요성과 전망 및 과제 | 1명(3.1) | | | |
| | 남녀의 성교육 | 1명(3.1) | | | |
| | 합계 32명(100 | | | | |

자료: 전길양 외(2006), p.60.

주: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2) 가정성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관련 현황

(1) 가정폭력 관련 상담프로그램 개발

가정폭력관련 상담프로그램의 발달은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과 배양의 중요성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점에 공감하여 가정폭력 상담 관련 연구 자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연구를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전길양 외, 2006 : 16-17).

첫째, 상담원들의 가정폭력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연구(보건복지부, 2000)를 보면, 정부의 가정폭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개 분야 전문인 즉, 경찰, 공무원, 교사, 상담원 및 의사들의 가정폭력인지도 향상을 통한 가정폭력대응능력의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자료와 개입교육 자료가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보다 유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동향을 파악하고 교육 자료를 사용할 5개 전문 집단의 가정폭력인지도 및 관련 요인과 교육욕구를 파악하였으며, 정책, 연구, 실무에 있는 전문인들로 초점집단을 구성하고, 매단계별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참조하고 있다. 개발된 교육 자료는 모두 10개종으로 예방교육 자료는 5개 분야의 전문인을 위해 개발되었고, 개입교육 자료는 5개 분야 전문인 중에서도 가정폭력사건을 직접 담당하게되는 경찰, 의료인, 상담원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담당자를 위한 사례관리 매뉴얼이 별도로 개발되었다.

둘째,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을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2004)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회해자 치유프로그램의 개발과 배포 뿐 아니라 전국 규모의 「2004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반여건의 마련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례 관리 모델 도입, 피해자 지원 응급체계의 확대, 그리고 여성폭력 개입기관의 공식지침의 작성이 만들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교육 프로그램 평가제 도입을 위해기존의 상담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실시, 교육내용과 교육기관에 대한 질적 향상 도모, 인증제 형식으로 상담원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가정폭력관련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전개,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안귀여루, 2002)연구에 의하면, 현재 각 상담소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틀에 비추어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후의 프로그램 개발에서 보완하거나 참조할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의 가장두드러진 특징으로 상담의 일반적 이론 및 기법에 대한 교육이 가장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이 심리적인 상담뿐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 조치와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 규정과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가 그 다음으로 많은 강좌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 연구는 상담원 양성교육에서 더욱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부분과 그 효과성을 위해 강조해야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국내의 가정폭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상담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기초적인 과정에서부터 즉 상담원 양성교육에서부터 실제적 현장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상담교육과 상담기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및 표준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길양 외, 2006: 18).

(2) 가정폭력 양성교육 사례

가정폭력 양성교육 사례의 하나로 성남여성의전화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전 문교육을 들 수 있다. 2010.3.22-4.5까지 6주간 매주 월-금 10:00-13:00에 총 100시간이고, 상담참관, 숙박교육, 법원참관, 기관방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교육은 주로 가정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폭력, 성매매 실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선착순 20명이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Ⅵ-12〉가정폭력상담전문교육 교육내용

| 횟수 | 날짜 | 시 간 | 강 의 내 용 | 강 사 |
|----|-------------|-------------|--|--------------------------------------|
| 1 | 4/21 | 10:00-13:00 | 등록 및 개강식 | |
| ' | 4/21 | 10:00-13:00 | 여성인권의 정치학 | 박인혜(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2 | 4/22 | 10:00-13:00 | 권력/폭력과 젠더/섹슈얼리티 | 김영옥(여성학강사) |
| 4 | 4/23 | 10:00-13:00 | 가정폭력의 실태 및 대책 | 신연숙(성남기정폭력상담센타 소장) |
| 5 | 4/26 | 10:00-14:00 |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 이은미(성남성폭력상담소장) |
| 3 | 4/27 | 10:00-13:00 | 한국 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변화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 6 | 4/28 | 10:00-13:00 | 수요집회(종군 위안부-국가에 의한 여성폭력) | |
| 7 | 4/29 | 10:00-13:00 | 가정폭력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여성의 심리 | 이복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
| 8 | 4/30 | 10:00-13:00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 9 | 5/3 | 10:00-13:00 | 이주여성의 기정폭력과 상담과정 |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 10 | 5/4 | 10:00-1300 | 성매매의 실태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 11 | 5/6 | 10:00-13:00 | 가정폭력, 성폭력 법 해설 | 이병일(법무법인 탑 변호사) |
| 12 | 5/7 | 10:00-13:00 | 여성폭력에 대한 법적 절차 및 대응 | 왕미양(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
| 13 | 5/10 | 10:00-13:00 |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 신해숙(경기 광주경찰서 경위) |
| 14 | 5/11 | 10:00-13:00 | 경기도의 여성정책 현황과 과제 | 최미정(경기여성연대 대표) |
| 15 | 5/12 | 10:00-13:00 |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운동의 흐름과 과제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16 | 5/13 | 10:00-13:00 | 검찰청,법원참관, 법률구조공단 방문(5시간) | |
| 17 | 5/14 -15 | 10:00-13:00 | 숙박교육-소수자인권강의3/역할극3/여성주의 상담 집단 코칭4/사례연구3 |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최종환(목사,집단상담, 코칭 전문가) |
| 18 | 5/17 | 10:00-13:00 | 상담의 기초원리와 기법 | 김미랑(연우심리연구소부소장) |
| 19 | 5/18 | 10:00-13:00 | 여성주의 상담이란 | 이미혜(한국여성의전화여성주의 상담실천 연구소(준) 소장) |
| 20 | 5/19 | 10:00-13:00 |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부부 치료적 접근 | 이병준(파란리본 카운슬링&코칭) |

78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 횟수 | 날짜 | 시 간 | 강 의 내 용 | 강 사 |
|-----|------|-------------|---------------------------------------|---------------------|
| 21 | 5/20 | 09:00-12:00 | 알콜의존환자의 특성과 가족대처법 | 고영(함께하는 좋은꿈 정신과의원장) |
| 22 | 5/24 | 10:00-13:00 |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 | 황춘화(아름다운가족상담연구소) |
| 24 | 5/25 | 10:00-13:00 | 상담유형 별 특성 및 사례연구(아내폭력) | 장순화(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 23 | 5/26 | 10:00-13:00 | 대상별 상담과정 (아동성폭력)과 지원체계 | 문경은(아동성폭력전문강사/이사) |
| 25 | 5/27 | 10:00-13:00 | 상담유형 별 특성 및 시례연구 (외도 시집갈등, 부부갈등) | 장순화(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 26 | 5/28 | 10:00-13:00 | 상담유형 별 특성 및 사례연구(성폭력,친족강 간, 데이트강간) | 이은미(성남성폭력상담소 소장) |
| 27 | 5/31 | 10:00-13:00 | 상담원의 자세와 상담 실무/수료식 | 신연숙(성남가정폭력상담센타 소장) |
| 6/1 | -11 | 14:00-17:00 | 전화 상담 참관 및 상담실습 (개별6시간) | 성남가정폭력상담센타 |

(3) 가정폭력 양성교육 요구도 분석

2006년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양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를 보자. 성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 100부의 설문지를 전국의 가정폭력 시설과 교육훈련기관에서 활동하는 상담원에게 배포하였 다. 이중 88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40대가 41.7%, 50대 26.2%로 상담원의 대부분이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91.8%로 가정폭력상담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종사원이 소속된 기관은 가정폭력상담기관이 71.3%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상담원이 53.2%, 소장이 4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방식은 오프라인 강의가 82.9%로 대부분 교육 장소를 중심으로 상담원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상담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적절성에 대해 그렇다 72.5%, 그렇지 않다가 19.6%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문인력(강사) 부족, 재정문제, 사례분석 및 수퍼비젼의 문제, 교육장소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교육기관은 여성단체 및 부설기관이 51.3%, 평생교육 및 부설기관이 17.5%의 순이었으며종사기간은 1~3년 미만이 39.3%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 45.9%, 대졸 32.8%의 순이었다. 전공의 경우 사회복지가 41.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담이 26.2%의 순으로 나타났다(전길양 외, 2006 : 30).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교육과 관련한 제안 사항에서 상담원들은 '교육 전반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 79

에 개선이 필요하다'(24명)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선정 필요성', '표준과목 구체적으로 제시', '보다 질 높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검증', '사례중심 강의', '수강생간의 능력별 수업필요성' 등을 개선사항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심화교육의 필요성'(12명), '현장실습 강화'(3명) 등을 제안하였다.

〈표 Ⅵ-13〉가정폭력상담원 양성 교육 소감과 개선점 및 제안사항

| 질문사항 | 구분 | 응답수(N,%) |
|---------------------------|--|------------|
| 상담원 양성교육 개선점 및 제안사항 | 교육전반에 개선이 필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 선정 표준과목 구체적으로 제시 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강사에 대한 검증 필요 실무사례 중심으로 수강생간의 능력별 수업필요성 | 24명(61.5) |
| | 일반과정, 심화과정 만들어 전문성 강화 | 12명(30.8) |
| | 현장실습 강화 | 3명(7.7) |
| | 39명(100.0) | |

자료: 전길양 외(2006), p.45.

주: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표 Ⅴ-14〉가정폭력상담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 질문사항 | 구분 | 응답 수(N,%) |
|----------------------|---------------|------------|
| | 상담기법 및 유형별 상담 | 16명(50.0) |
| | 상담사례분석 | 8명(25.0) |
| 가정폭력상담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심리검사 활용법 | 3명(9.4) |
| | 법률영역 | 2명(6.2) |
| | 상담수퍼비젼 | 3명(9.4) |
| | 32명(100.0) | |

자료: 전길양 외(2006), p.46.

주: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향후 희망하는 가정폭력상담원 보수교육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담기법 및 유형별 상담'(16명), '상담사례분석'(8명), '다양한 심리검사 활용법' (3명), '상담수퍼비젼'(3명)등이었다. 그 외 '법률영역'에 관한 보수교육 프로그램(2 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전길양 외, 2006 : 45-46).

3) 성매매 양성교육 관련 현황

성매매에 관한 양성, 보수교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의 성매매방지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인원은 2006년 249명, 2007년 122명, 2008년 157명, 2009년 93명, 2010년 90명, 2011.4.30 현재 40명으로 2006년 이래 수료인원은 751명이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100시간, 현장실습 50시간으로 이루어 진다. 이론교육 100시간은 소양분야(여성복지, 여성정책 등) 10시간, 전문분야(이론: 성매매관련 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자활관련법·정책) 25시간, 전문분야(실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 구조/법률/의료/자활지원 등) 25시간, 자활, 행정회계 등 40시간으로 구성되고, 현장실습 50시간은 아웃리치, 법률지원 동행 등으로 이루어 진다. 성폭력, 가정폭력 양성교육이 100시간인데 비해 1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습시간 등을 좀 더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의 상담원 자격요건 개별기준을 충족한 자, 성매매방지시설 설립준비자, 여성 폭력방지기관 종사자 및 근무 경력자이다. 설립준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공문 혹은 설립주체가 법인인 경우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생 선발과정은 시설·상담소 등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교육대상 자 명단을 제출하게 되며,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및 근무경력자 대상 교육생 모집시에는 교육기관에서 선발기준 및 교육인원을 별도로 공고하게 된다. 교육생 선발은 개별기준을 충족한 자 중 수요조사일 기준 시설 등에 근무 중인 수습종사자(상담원의 법정종사자 수에 미달하는 기관의 근무자)를 우선선발한다.

교육 수료는 이론 90%, 실습 90% 이상 출석 시 수료를 인정하게 되며, 출석시간 미달(중도포기자)로 수료하지 못한 자가 추후 추가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수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액 자비 부담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8) 현장실습은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성매매방지시설·상담소 등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이하 영아를 양육 중인 여성 및 3급 이상의장애가 있는 교육생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하여 소속기관 실습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로 지원되며, 다만 교육비의 일부는 교육생이 부담한다.9)

성매매방지 상담원양성교육은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나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¹⁰⁾ 성매매이외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이 있다. 2010년 양성교육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방지 상담원은 82개 교육기관에서 1,897명을 교육하였고, 성매매방지상담원은 1개 교육기관(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서 90명을 교육하였다.

| 〈표 Ⅴ-15〉2011년 제1기 | 성매매방지 | 상담원 | 양성교육 | 시간표(| 3 28–4 26 |) |
|-------------------|-------|-----|------|------|-----------|---|
|-------------------|-------|-----|------|------|-----------|---|

| 구분 | | 3.28(월) | 3.29(화) | 3.30(수) | 3.31(목)~4.1(금) 숙박교육(하이서울YH) | | 4.4(월) |
|-----------------|---|--------------|--------------------------|--------------------------|--------------------------------|-----------------------------|---------------------------|
| 09:00~ 10:00 | 1 | | | | | | |
| 10:00~ 11:00 | 2 | 등록 및 교육안내 |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권인숙) | 성매매방지 정책의 이해 (윤덕경) | 자활워크숍: 윙사례 (최정은) | 성매매방지법과 법적 구제절차 (권정순) | 법률지원과 상담원의 역할 (서윤미) |
| 11:00~ 12:00 | 3 | (교육팀) | (== 1/ | (= 10) | (.3 = / | (_3_/ | " |

^{8) 50%} 미만 수강 시 처음부터 재수강 후 수료, 50% 이상 수료 시 1년 이내 재수강할 경우 미수강 부분만 수강 후 수료, 50% 이상 수강하였어도 1년 이후 재수강 시에는 처음부터 재수강하게 됨: 여성가족부(2011), 「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p.18.

^{9) 2011}년 현재 1인당 12만원 사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2011), p.18.

¹⁰⁾ 여성가족부(2011), p.18.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 구분 | | 3.28(월) | 3.29(화) | 3.30(숙 | - | | 3.31(목)~4.1(금) 숙박교육(하이서울YH) | | 4.4(월) | | |
|-----------------|----|---|---|------------------------|---------|-----------------------------|--------------------------------|----|------------------------|-------------------------|--|
| 12:00~ 13:00 | - | | | | | | | | | | |
| 13:00~ 14:00 | 4 | 아이스 브레이킹ㆍ네트 | 여성복지정책 | | | 희망 카 워크 | | _ | 개매피해 | | |
| 14:00~ 15:00 | 5 | 워킹 (이시천) | (정재훈) | 성매매여 자활의 이 (김인숙 | 해 | (최수 박정 | 연· 민· | | 의료지원 이희애) | 긍정과 공감의 말하기 (최광기) | |
| 15:00~ 16:00 | 6 | | | | , | 양혜 전수 | | | | (*13*1) | |
| 16:00~ 17:00 | 7 | 성매매와 여성인권 (정미례) | 섹슈얼리티와 젠더 (변혜정) | | | 청소년 영상물 | | 절기 | 경찰수사 차의 이해 윤후의) | 이주여성 | |
| 17:00~ 18:00 | 8 | (0 1 1) | (2 113) | 상담원의 윤리와 지 (정박은지 | 세 | 및 <u>!</u> (김란0 | 토론 . | | _ | 지원의 이해 (박수미) | |
| 18:00~ 19:00 | - | | | | 17 | | | | | | |
| 19:00~ 20:00 | 9 | | | | | 네트 -소통 | | | | 에세이 쓰기 -개별과제* | |
| 20:00~ 21:00 | 10 | | | | | | | | | | |
| 구분 | | 4.5(화) | 4.6(수) | 4.7(목) | 4. | 8(금) | 4.11(| 월) | 4.12(화) | 4.13(수)~ 4.26(화) | |
| 09:00~ 10:00 | 1 | | 프로그램 | 성매매피해 | | 낭후스트 | | | | | |
| 10:00~ 11:00 | 2 | 소수자와 인권 (한채윤) | 기획의 여성: 이론과 실제 통합적 | 여성의 통합적 지원 | 0 | 스장애 기해와 유기법 | 인터 성매 (유복 | 매 | 내 안의 힘 기르기 (고미숙) | | |
| 11:00~ 12:00 | 3 | , | (고이경) | (고이경) (송경숙) | | 안현의) | | | | | |
| 12:00~ 13:00 | - | | | | | | | | | 현장 | |
| 13:00~ 14:00 | 4 | | | | | 활지원 | | | | 실습 | |
| 14:00~ 15:00 | 5 |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 #성장애인 <u>갈등</u> 경영 상담원의 (이 폭력피해 의크쇼 스트레스 | | 상담의 | | 성매매여성 활동가 상담의 실제 워크숍: | | -11 | | |
| 15:00~ 16:00 | 6 | 및 대책 (한영애) | (장윤경) | 관리 (정재원) | 트 지원 | 소년의 특성과 !의 이해 김선옥) | 및 A (신박7 | | 희망의 선택 (우애령) | 택 | |

| 구분 | | 4.5(화) | 4.6(수) | 4.7(목) | 4.8(금) | 4.11(월) | 4.12(화) | 4.13(수)~ 4.26(화) |
|-----------------|----|--------------|-----------------|--------------|--------|-----------------|---------|---------------------|
| 16:00~ 17:00 | 7 | 남성문화와 성구매 | 성매매방지법 의 사례와 | 여성주의 리더쉽 | | 사회적 일자리와 | 최종평가 및 | |
| 17:00~ 18:00 | 8 | (이태준) | 판례분석 (원민경) | 다다급 (윤혜린) | | 사회적 기업 (이은애) | 실습안내 | |
| 18:00~ 19:00 | - | | | | | | | |
| 19:00~ 20:00 | 9 | | | | | | | |
| 20:00~ 21:00 | 10 | | | | | | | |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1),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상)」, pp.354-355. 주: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가. 종사자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1) 성폭력 관련 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0조). 즉,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2010.4.15 신설).

위의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은 1)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3)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84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동 시행령 제8조).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기간, 종사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동시행규칙 제9조 별표 4).

보수교육 내용은 일반과정, 전문과정, 고급과정으로 구분된다.

〈표 Ⅴ-16〉 성폭력 관련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

| 교육과정 | 개설강좌 | 교육내용(과목) |
|------|--------------------------------------|---|
| 일반과정 | 상담 실무자 과정 | 상담이론 상담구조화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상담원의 소진예방·자기치유 피해자 의료 지원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성폭력 관련 법제 |
| | 피해자 프로그램 |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 관계형성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 |
| 전문과정 | 행위자 프로그램 |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알코올 상담 자기통제 기술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 |
| | 상담 전문가 과정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 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 아동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청소년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폭력피해 수사·재판 실무 |
| 고급과정 | 상담사례 연구 |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집단)상담실습 역할연습 워크숍 |

보수교육은 2일 이상의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 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으로는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범죄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범죄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중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2) 가정폭력 관련 기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의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의 4). 즉,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5.8.).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중 가정폭력이 가장 먼저 규정하였다.

여기서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으로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3)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동 시행령 제4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동 시행규칙 제11조의 2 별표4의2, 본조신설 2009.11.2.).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2일 이상의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수교육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으로는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Ⅴ-17〉가정폭력 관련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

| 교육과정 | 개설강좌 | 교육내용(과목) |
|------|-----------|---|
| 일반과정 | 상담 실무자 과정 | 상담이론 상담구조화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상담원의 소진예방·자기치유 피해자 의료 지원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가정폭력 관련 법제 |
| 전문과정 | 피해자 프로그램 |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 관계형성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 |

| 교육과정 | 개설강좌 | 교육내용(과목) |
|------|--------------------------------------|---|
| | 행위자 프로그램 |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알코올 상담 자기통제 기술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 |
| | 상담 전문가 과정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등 대상별) | • 장애인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국적, 체류 등 관련 법률 이해 • 폭력피해 수사·재판 실무 |
| 고급과정 | 상담사례 연구 |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집단)상담실습 역할연습 워크숍 |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교육기간 및 종사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 강좌 및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성매매 관련 기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의 3, 2010.2.4 본조신설). 즉,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으로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해당된다(동 시행령 제5조의 2, 본조신설 2010.7.21.).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1) 실무과정: 행정회계,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 2) 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주거·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다(동 시행규칙 제9조의 4, 본조신설 2010.8.3.).

4)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수교육 면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동 법 제13조 제2항),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시설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보수교육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동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즉, 사회복지 보수교육 중 면제자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시설의 경우는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11)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1) 성폭력·가정폭력 관련기관

(1) 보구교육 현황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

¹¹⁾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p.13.

진흥원을 비롯하여 대학, 전문대학,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경력별·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선택을 통한 상담 전문성 향상, 경력별·대상별 상담현장 적용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이론 및 상담기법 습득,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상담 전문성 향상, 가정폭력피해자·행위자 상담을 위한 사정능력 및 상담기술 향상, 성폭력피해자 치유 및 청소년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능력 획득을 목표로 하며, 2010년에는 총 11개 교육과정을 17회 연간 일정으로 운영하였다.

추진방향은 일반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각 과정별로 상담경력을 적용하여 모집하며, 아동성폭력 상담원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현장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현장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획·운영하며, 심화과정의 경우 집단인의 조정 및 슈퍼바이저 인원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수퍼비젼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과 지원관련 추진방향과 행정실무에 관한 교과목 편성을 통해 상담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전체 과정 만족도는 교육내용이 4.38, 교육전반이 4.29, 강의 (강사만족도)가 4.36으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12)

2011년의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교육 예산은 141,750천원(국비기준)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2010년에는 동예산이 129백만원이었는데 2011년에 증가한 것이며, 교육인원수도 2010년 574명에서 2011년에는 630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시설 종사자 2천여명에 대한 보수교육 인원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매년 교육인원수와 예산이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지역별 교육이수인원은 2010년의 경우 서울 63명, 부산 26명, 대구 25명, 인천 25명, 광주 34명, 대전 17명, 울산 16명, 경기 93명, 충북 27명, 충남 40

¹²⁾ 이것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2010년도 가정·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에서 전체 과정 평균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임: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2010), '2010년도 가정·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결과보고서'.

명, 전북 38명, 전남 31명, 경북 31명, 경남 35명, 강원 35명, 제주 18명이다. 교육생 선발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보면, 첫째, 각 과정별 상담경력을 적용하여 교육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상담업무 종사자가 선정되도록 해야 하며, 행정, 총무 등의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가급적 제외하여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종사자가 교육을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별 적합한 교육대상 자격ㆍ경력 기준 등은 매년 2-3월경 보수교육 수립시 공문으로 통보하게 된다.

둘째, 국고보조금 미지원 시설종사자가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안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지자체에서는 시설 종사자의 최근 교육 이수내역을 반드시 파악하여 관내 시설 종사자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교육 수요조사 시 지자체에서는 교육 추천순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교육비의는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으로 납부하며, 교육비의 여비는 지자체 또는 소속 기관에서 교육기관에게 별도 지급한다. <표 V-18>은 2010년도 가정·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을 보여 준다. 2011년에 더 추가된 프로그램으로는 일반과정에 '상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심화과정에 '여성폭력관련시설 대표·소장 및 전문가 평가회의 워크숍'이 있다. 상담원들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명상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상담하면서 상담자로서 힘들고 소진되

는 부분을 재충전해 주는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¹³⁾ 교육원에서 숙식할 경우 숙식비는 포함됨.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 91

〈표 V -18〉 2010년도 가정·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일정 및 교육인원
(단위: 명)

| 과정 번호 | | 세부과정명 | | 0111 | 교육기간 | 예상 | 교육인원 | | | 다. (3) 수료 |
|-------------------------------|------------------------------|----------------------|------------------------|------------------------|------------------|-----|------|-----|----|--------------|
| | | | | 일시 | (총시간) | 인원 | 남 | 여 | 합계 | 인원 |
| 일반 과정 1 (3회) | 상담이론과정 | 1차 | 4월 13일(화) ~ 16일(금) | | 41 | - | 39 | 39 | 38 | |
| | | 2차 | 6월 15일(화) ~ 18일(금) | 3박4일 (28시간) | 44 | - | 42 | 42 | 42 | |
| | | 3차 | 9월 27일(월) ~ 30일(목) | | 42 | 1 | 47 | 48 | 48 | |
| 1 |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 I | 9월 7일(화) ~ 10일(금) | 3박4일 (28시간) | 47 | - | 44 | 44 | 44 | |
| | | II | 4월 21일(수) ~ 23일(금) | 2박3일 (21시간) | 26 | - | 25 | 25 | 25 | |
| |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 I | 5월 10일(월) ~ 13일(목) | 3박4일 (28시간) | 44 | 1 | 40 | 41 | 41 |
| 2 | 2 | | II | 7월 21일(수) ~ 23일(금) | 2박3일 (21시간) | 27 | 2 | 26 | 28 | 27 |
| 3 전문 과정 (12회) 4 5 | 성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 I | 8월 24일(화) ~ 27일(금) | 3박4일 (28시간) | 40 | 4 | 32 | 36 | 36 | |
| | | II | 7월 14일(수) ~ 16일(금) | 2박3일 (21시간) | 26 | - | 25 | 25 | 25 | |
| | (청소년)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교육 | | 7월 6일(화) ~ 9일(금) | 3박4일 (28시간) | 47 | 2 | 42 | 44 | 44 | |
| | 1366상담원 교육 | 1차 | 6월 7일(월) ~ 9일(수) | 2박3일 | 28 | - | 28 | 28 | 28 | |
| | | 2차 | 10월 20일(수) ~ 22일(금) | (21시간) | 19 | - | 18 | 18 | 18 | |
| | 원스톱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 상담원 교육 | | 9월 1일(수) ~ 3일(금) | 2박3일 (21시간) | 23 | - | 21 | 21 | 21 | |
| | | 장애인성폭력 상담원 교육 | | 10월 5일(화) ~ 8일(금) | 3박4일 (28시간) | 40 | 1 | 39 | 40 | 39 |
| | 8 | 아동성폭력 상담원 교 | | 6월 22일(화) ~ 25일(금) | 3박4일 (28시간) | 38 | - | 34 | 34 | 34 |
| 심화 | 1 | 가정폭력 상담사례 워크샵 | | 10월 28일(목) ~ 29일(금) | 1박2일 (13.5시간) | 25 | 3 | 21 | 24 | 23 |
| (2회) | 과정 (2회) 2 성폭력 상담사례 워크샵 | | 11월 4일(목) ~ 5일(금) | 1박2일 (13.5시간) | 20 | 1 | 20 | 21 | 21 | |
| 합계 | | | | 557 | 14 | 523 | 537 | 533 | | |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0), 2010년도 가정·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결과보고

92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2) 종사자의 보수교육 경험 및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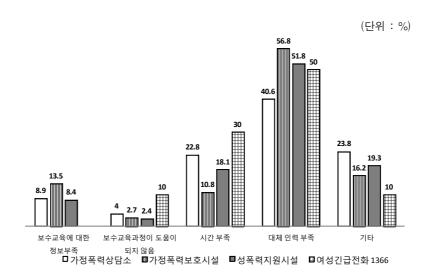
〈표 ₹ -19〉 종사자의 보수교육 경험 및 욕구

(단위:%(명))

| 구분 | | 가정폭력 상담소 | | 가정폭력 보호시설 | | 성폭력 지원시설 | | 여성긴급 전화 1366 | |
|-------------------|------|-------------|------|--------------|------|-------------|------|-----------------|--|
|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보수교육 미참여 이유 | | | | | | | | | |
|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 8.9 | 9 | 13.5 | 5 | 8.4 | 7 | - | - | |
| 보수교육과정이 도움이 되지 않음 | 4 | 4 | 2.7 | 1 | 2.4 | 2 | 10 | 1 | |
| 시간 부족 | 22.8 | 23 | 10.8 | 4 | 18.1 | 15 | 30 | 3 | |
| 대체 인력 부족 | 40.6 | 41 | 56.8 | 21 | 51.8 | 43 | 50 | 5 | |
| 기타 | 23.8 | 24 | 16.2 | 6 | 19.3 | 16 | 10 | 1 | |
| 계 | 100 | 101 | 100 | 37 | 100 | 83 | 100 | 10 | |
| 보수교육 제공 희망 시설 | | | | | | | | | |
| 여성가족부 | 40 | 46 | 39.5 | 15 | 27.1 | 26 | 22.2 | 2 | |
| 대학교의 교육시설 | 9.6 | 11 | 15.8 | 6 | 6.3 | 6 | 11.1 | 1 | |
| 한국양성교육 | 34.8 | 40 | 18.4 | 7 | 42.7 | 41 | 55.6 | 5 | |
| 여성아동보호 | 0.9 | 1 | - | - | 1 | 1 | - | - | |
|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협의회 | 13 | 15 | 23.7 | 9 | 18.8 | 18 | 11.1 | 1 | |
| 기타 | 1.7 | 2 | 2.6 | 1 | 4.2 | 4 | - | - | |
| Й | 100 | 115 | 100 | 38 | 100 | 96 | 100 | 9 | |

자료: 김재엽 외(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 520,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p. 816-817, pp. 861-862, pp. 901-902. 주: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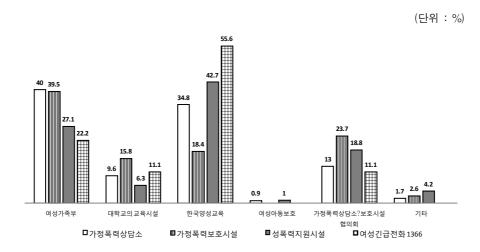
<표 V-19>는 상담원들의 보수교육 미참여 이유와 보수교육이 어떤 기관에서 제공되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여 준다. 우선 보수교육 미참여 이유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 1366을 막론하고 대체인력의 부족을 4-50%의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상담기관 종사자 특히 상담원들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대체인력 부족으로 교육에 미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보수교육을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김재엽 외(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 520, 김재엽 외(2010), 「2010 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p. 816-817, pp. 861-862, pp. 901-902. 주: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됨.

〈그림 Ⅴ-1〉 종사자의 보수교육 미참여 이유

한편 보수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상담원 교육에 관한 경험을 가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육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성매매에 관한 지원센터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있으며 성매매관련 교육에 관해서는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교육과 관련하여 양성교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그리고 보수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료: 김재엽 외(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 520,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p. 816-817, pp. 861-862, pp. 901-902. 주: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됨.

〈그림 Ⅵ-2〉 종사자의 보수교육 제공 희망 시설

2) 성매매 관련기관

교육대상은 성매매방지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의 종사자이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다.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9조의 4에 따라 1) 실무과정: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 행정회계 2) 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주거·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 연계에 관한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사항, 대표자의 역량개발에 관한사항 등으로 나누어진다.

실제로 2010년에는 청소년지원 전문과정(2010.9.3), 구조·상담지원 전문과정(10.1),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 전문과정(11.4-11.5), 시설대표자 역량개발 전문과정(11.24-11.25), 자활지원 전문과정(12.3), 행정회계실무과정을 수행하였다. 2011년에는 구조상담전문과정(2011.5.18-5.20), 청소년지원 전문과정(6.29)이 진행되었다. 이 중 2010년에 1일 8시간으로 진행된 '구조·상담지원 전문과정'은 성매매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회복전략을 위한 방법론을 익혀 구조 및 상담지원 역

량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서 복합외상증후군의 이해와 치료적 접근, PTSD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하였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과정이라 교육생이 110명 정도로 많았으며, 교육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였다고 한다. 또한 2011년 2박 3일로 진행된 '구조상담전문과정'에서는 여성주의 집단상담의 기법이해와 적용, 심리치유의 기법적용을 통한 자기치유 시간 갖기, 브레인 칼라 진단을 이용한 내담자 이해의 폭 넓히기를 목표로 한 강의 등이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여성주의 타로'라고 하는 타로 점을 매개로 한 여성주의 상담과정을 교육하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교육생 선발은 지원시설·상담소 등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교육신청서를 직접 접수해야 하며, 연간 교육일정, 선발기준 및 교육인원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공고한다. 교육 수료기준은 90% 이상 출석을 해야 하며, 출석시간 미달로 수료하지 못한 경우 추가교육을 통하여 수료할 수 있다.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로 지원한다(여비는 제외). 성매매방지 지원시설및 상담소 등의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인 경우는 본 보수교육의 수료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14

3. 종사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문제점

가. 양성교육의 문제점

1)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이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기 어렵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관련 상담원들은 폭력관련 상담 및 긴급구호, 정보제공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력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심각한 폭력의 진전을 차단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

¹⁴⁾ 본 보수교육 수료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면 제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http://edu.welfare.net)하고 수료증을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함으로써 면제받을 수 있음 : 여성가족부(2011), p.18.

폭력 및 성폭력관련 상담원의 전문성은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예방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상담원의 다양한 형태의 접근을 통한폭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은 가정폭력·성폭력문제의 예방과 효과성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상담원 양성 교육은 훈련내용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미비한 형편이며, 심화교육 혹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때문에 전문성을 배양하고 상담원으로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변혜정 외 : 2005).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담원들은 다양한 대응전략을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상담원들은 내담자들이 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위기상담의 개입은 물론 상담소, 일시보호시설(피해자보호시설),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력과 심리적 적응을 도모하여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적절한 상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 교육은 문제나 위급상황에 대처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담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요인 중의하나가 교육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가정폭력관련 상담지원자에게 공식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100시간이고, 성매매는 150시간, 그리고 성폭력피해 상담지원자는 64시간이었으나 최근 성폭력특별법 시행령에서 100시간 교육과정을 명시하였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교육시간에 대해 가정·성폭력 상담원으로서 폭력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고 실시 내용도 양성기관들마다 다른 형편이어서 상담의 적절한 효과성을 높이는데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전길량, 2006 : 3-4). 이에 일부 상담원양성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수 시간을 더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이에 대한 보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5)

성폭력 양성교육시간이 64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면서 늘어난 시간에 대

¹⁵⁾ 현장 상담원을 통해서 얻은 결과임.

해 교육이 심화되거나 다양화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다음의 A사례는 친족성폭력의 특성이나 장애인상담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부분 이 있었고, 그밖에 상담의 슈퍼비전 부분도 기본교육에 넣어 상담이 진행되 는 과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교육시간의 부족이 논의되 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폭력의 경우 교육시간이 늘어나면서 내용이 보다 전문 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교육시간의 확대로 교육의 전문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예라 할 것이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개별 어떤 성폭력에 대한, 친족성폭력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10대 성문 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한 거예요. 원래 장애인상담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상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좀 더 전문화된 강사들을 데려와서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심화하게 됐죠. 예로 상담하는 과정들을... 이것은 약간 저희도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상담하고 난 내용에 대한 슈퍼비전을... 원래는 교육생들은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못 보게 되어 있는데... 수료하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만 슈퍼비전을 보게되는데... 슈퍼비전을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슈퍼비전 진행되는 과정,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 속에 넣었죠(A사례).

B사례에서는 성폭력상담원 100시간의 교육이 강의 100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보다는 상담원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상담사례 일지나 수퍼비전 리뷰, 스터디 등을 통해 상담원의 상담자질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사실, 그럼 200시간 하면 괜찮냐? 사실 좀... 그러니까 64시간과 100시간은 크다면 큰 차이지만, 확 그렇게 체감되는 무슨 그런 것 사실... 실은 64시간이나 100시간이나 어쨌든, 뭔가 앉아서 강사의 어떤 강의를 전달받는 것이 주로 되는 시간인데, 저희가 좀 그런 실습이나 현장 이런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실제 해보는 그런 훈련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상담 현장에서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수퍼비전이라든지 일지 같은 것을 리뷰한다든지, 이런 것 해서, 수많은... 일지 리뷰도 그런 것이지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가지고 온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게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저는 경험으로 채우는 시간의 문제, 시간을 채우는 경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3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이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약간, 100시간을 150시간으로... 저는 별로 그런 방식에 크게 동의하지 않고, 사실은 뭐 64시간과 100시간의 차이도... 탁 강의로만 느끼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단체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스터디라든지... 스터디 같은 게 사실은 의식화, 고양... 그런 시스템인 것이지요. 그런 식의 스터디라든지, 어떤 상담소나 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례연구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 다 갖추고 있을 거예요. 시스템을. 그리고 상호, 서로 그룹슈퍼비전, 피어슈퍼비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서로서로 계속해서 점검해주면서 자기 실력을 늘려가고, 어떤 노하우를 늘려가고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B사례).

다음의 사례들은 상담원 양성기관에서 기본교육시간을 끝내고 실습시간을 따로 보충하는 예들을 보여준다. 100시간 교육을 마치고 나서 6개월 정도 상담자원활동 기간을 가지거나(C사례), 법률상담이나 전화 받는 것을 참관하거나(D사례), 따로 스터디를 진행하거나(E사례), 조사동행, 재판동행, 진술서 작업 등 법률지원(F사례)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상담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소양들을 습득한다. 이러한 실습과정은 기본 100시간과정 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으로서 현재의 20시간 정도로는 매우 부족하다 할것이다. 실제 경험에 의한 상담자 훈련이 내담자를 안심시킬 수 있고 그를통해 본인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담의 서비스질을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저희는 100시간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상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 끝나고, 저희가 임의로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단체에 와서 상담자원활동을 적어도 일정기간, 저희는 6개월로 정하는데, 일정기간 이상 하실 분들... 그것을 약속하고 실습교육자를 받는데, 이번에 세 명... 34명 배출했잖아요? 우리 단체에 와서 상담자원활동을 6개월 이상 정도 하실 분에 한해서 실습교육 합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자기는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세분이... (C사례)

이제 직접 저희 기관에 와서, 법률적인 지식 같은 것, 사실 한 번 듣는다고 아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유형별 지원방법 같은 것, 사건 지원방법 같은 것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살짝 시험도 보고... 퀴즈같은 것도 조금 보고...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참관을 시키죠. 전화받는 것을 처음에는 보게 하고, 일지를 많이 읽으시게 하고, 전화받는 것을 보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선배 자원활동가가 이 분이 전화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슈퍼바이징 해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죠(D사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아까 실습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 교육과정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에 실습은 있지만, 맨투맨 실습같은 것을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100시간 끝났다고 해서 다 교육이 끝나는게 아니라, 저희도 64시간이었을 때는 이제,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꾸려서 외부에서 데려와서 하기도 하고, 책을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아무튼 상담소의 인력이 그분들의 상담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100시간으로 되도, 어쨌든 상담에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관이라든지, 전화상담 참관이라든지 법률상담 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하고요.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상담활동을 하지 못하게끔해요. 스터디라는 것 자체는 100시간으로 부족한, 그 후에 교육과정들을 보강할 수 있는 또다른 심화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죠(E사례).

상담소가 그걸 전체적으로 하니까 경험을 많은 사람을 하게 하면서, 예를 들어 조사 동행, 재판 동행 이런 걸 따라 다니게 하면서 같이 하고, 진술서 작업을 연습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실습을 좀 더 하게 해서 본인도 자신감이 붙고 내담자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게 됐을 때 투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뽑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성매매 상담소나 어디에서 시설에서 조금 경험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성폭력쪽은 많이들 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스펙 쌓기 얘기하셨잖아요. 자격증은 많은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F사례).

2) 상담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대상의 양성교육의 요구도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상담교육'과 관련한 제안이 가장 많았다. 실질적 교육과 상담사례 강화, 전문화된 상담기법과 구체적인 내용, 다양한 상담이론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법률'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체계화된 '상담원 보수교육과 수퍼비젼'을 통해 상담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상담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상담원양성 교육내용의 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한다(전길양 외, 2006 : 71-72).

또한 성폭력관련 교육자료 분석결과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에서 주제별 교육내용의 경우 '상담유형별 유의사항'에 집중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

100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는 반면, 상대적으로 상담실습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별 개설 강좌수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기관에 따라 내용에서 상이한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야별 필수이수 영역을 정하거나 강의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기관별 교육운영에 관한 관리 및 감독체계의 강화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전길양 외, 2006 : 73).

3) 양성교육 목표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양성교육은 전문적인 상담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목표와 거리가 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즉, 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격증 취득의 한 방법으로 양성교육을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교육생들을 상담자로 양성하여 상담소에서 채용하겠다는데 대한 의지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성폭력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즉 상담원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상 담원 교육을 받고 상담소에서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사이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추세에 따라 자격증의 하나로서 상담원교육을 수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G, H사례). 그렇게 하다보면 교육과정 중 상담에 관한 기 초 이론 등은 다른 자격증에서도 들었던 것이라 흥미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 난다. 교육을 진지하게 진행시켜야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채용을 위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듣기는 하지만... 이 분들 중에는 굳이 꼭 성폭력상담소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듣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자격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폭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또 성교육이나 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어떤 요구 또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소에서도 이 교육을 진행하는 목적이, 교육해서 우리가 상담자로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는 경우 좀 드문 것 같습니다(G사례).

제가 보니까 '자격증 인플레이션'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자격증

들을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 중의 일환으로 성폭력도 해놓으면 좋다... 사실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다라는 것은 아닌데, 옛날과 비교해보면... 제가 말하는 '옛날'은 뭐, 10년 전, 이렇게 한 번 비교해보면 그런 분들의 포지션이들어나서... 이게 강의를 100시간 짜고 구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주의 관점에 관한 부분이 있고, 상담에 대한 베이스 부분이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이렇게 보통 짜잖아요? 그런데 상담에 대한 기초이론 이런 것들은 이 분들 다이미 다아시는 거죠. 그런 분들, 그런 파트 되게좀 재미없어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H사례).

이에 대해 상담기관 관계자들은 상담원교육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배치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도 필요한교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I, J사례). 그러나 이 교육은 엄연히 양성교육이고 그 목표는 상담기관에 배치될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양성교육이 아닌 일반 사회교육의 차원으로까지 이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담원 양성교육에 의한 상담원배출이 상담원 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 상담원 배출은 많은데 상담소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인적자원 낭비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담소는 거의 3명 정도의 T/O만 있기 때문에 상담원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담원 관계자들은 양성된 상담원들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미 다른 분야의 상 담을 하고 있거나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관련 영역에서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의 상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상담영역에 충분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상담자들의 자질향상 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양성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양성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 서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국가의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국가의 정책이라는 측면에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하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취업교육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가폭, 성폭이라는 것 자체가 꼭 상담소에서 일 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미 사회복지사 인 분들이 교육에 많이 오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폭, 성폭은 기본이라고 얘기하셔요. 오셔서. 이게 자기가현재 하고 있는 취업 분야에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취업을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 특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피해가 있었거나 현재 피해가 최근에 있었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내담자를 역량 강화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권하기도 해요(I사례).

그런데 이것 취업과 연관시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자원의 낭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상담, 심리상담을 배우신 분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분들이 성폭력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이해가 없이 상담했을 때,이 많거든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성폭 상담소에 유입되는 것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든지 이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격과,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자격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서의이나 ...을 가지고 접근할수 있는... 분야가 있다(J사례).

4) 교육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2006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폭력상담원 대상의 양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를 보기로 하겠다. 상담원 요구도조사에서 '법에근거한 교육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길양, 2006:72) 현재 가정폭력의 경우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있는 반면에(2006.4.28 법 개정) 성폭력, 성매매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는상태이다. 당시 가정폭력시설은 신규 설치 시설이 너무 많아 시설관리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생겨 난 것이다.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면서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폭력방지에대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자 신규 설치 시설이 부쩍 늘었고, 이에 따라 상담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전국 상담원 교육훈련기관은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나치게 많이 생겨난 부분이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63개소에서 연 2,500명(가정폭력상담원 1,270명, 성폭력상담원 1,374명)에 달하는 상

담원이 배출되었고, 2010년에는 전국의 민간 가정폭력 교육훈련시설을 통해서 배출된 상담원 이수자는 1,897명으로 6년 전에 비해서 1.5배가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교육훈련시설 설치의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원수가 통제되지 않은 채 증가일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규정이 있어서 이 정도의 증가에 그쳤다고 볼 수도 있다. 상세한 사항은 성폭력, 성매매 교육인원수와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보수교육의 문제점

1) 중앙을 중심으로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수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상담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이 너무 서울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K사례). 전남, 경북등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서울의 강사를 모셔오면 된다는 것이다. 지역차원에서의 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서는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모든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으로 집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저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보수교육을 지역으로, 권역별로 좀 교육장을 분산시키면 좋겠다. 강사가, 진흥원 교수가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광주 같은 경우 여성재단으로 와서 교육을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성재단에 정책 연구원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쪽에서교수트레이닝을 시켜서, 몇 꼭지 정도는 교육을 해도 되는 거고(K사례).

2) 체계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내용이 대상별, 집단별로 차등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L, M사례). 참석자들의 연차가 다양한데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이도 조절이 되지 않는 등 비슷한 수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야 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섞여 있어 교육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보수교육을 했다고 해서 상담원들의 그게 업그레이드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니까 연차 수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3년 이상을 원하는 집단인데 가보면 7,8개월... 이렇게 인원이 없으니까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기본이면, 그 과정이면 성폭력피해자에게, 64시간 맞고 온 이후에 만약에 상담 프로그램이든 어떤 뭐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받고 상담소에 가서 피해자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이런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아이템이 여러 가지라는 거지. 사이코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상담... 그런 부분은 상담자 소진해서 프로그램에서 명상도 들어가서 빼주고 해야 될 텐데, 그 프로그램에서 교육생을 좋아하는 거 같아. 자기가 채용을 하고 뭐하고... 끝나고 나면 성폭력피해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전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 가해자도 마찬가지. 성폭력 가해자도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 가지고 거기는 피해 상담을 웬만큼 하고 가해자로 와야 되는데... 다 초짜들이 오는 거야. 7,8. 그러면 내가 가서 할 때 어디부터 해야 할지를 참(L사례).

양평원도 지금 일반, 전문, 심화 과정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난이도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화 과정인데, 온 사람이 심화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까 사례... 가해자 교육을 했죠. 이게 만약에 3년 이상 들은 사람이 가해자 교육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3년 이상은 했는데, 가해자 교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해자 심화 교육을 들어. 그럼 이 사람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이 있지 않은데, 그 심화교육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소장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전 잘모르는데... 소장님이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그 소장들이 경력은 많은데, 상담 경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담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상담소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씀들이 많으세요. (웃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상담 받은 거 이런 얘기는 많으신데... 이게 좀 뭐랄까. 근데, 경력이 그렇게 사례는 많은데 뭐가 없는. 뭔지 꼭 짚어 말은 못하겠지만(M사례).

3) 참여식 교수방법이 부족하다.

교수방법론으로 참여식 수업을 통해 서로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쉽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N사례). 예컨대 수업에서 사례가 활용된다면 사례에 대해 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들을 불러서 진행당시 이야기도 듣고 어려운 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차수가 많은 사람을 교육에 활용하면 좋은데, 그 분들은 보수교육 내용을 지역의 강의를 통해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저는 늘 교육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여식 교육을 진행을 시키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고...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교육방법은, 물론 이론적인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오래 계신 분들이 현장의 경험들을 나누어주는 것이 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소진되는 데도 똑같은 것 때문에 소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겪고 이겨내신 선배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을때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 이런 조금... 서로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참여식 교육을 하라고 매번 요구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참여식 교육을... 계획은 잡아놓으신 것 같아. 이론 강의하고 참여식 강의를 해야겠다 하는데, 이론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교수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끝나 버리는 거야(N사례).

-V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 1.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1 | 1. | 양성교육 및 | 보수교육 | 개선안 | 10 |)9 |
|----------------------|----|--------|------|-----|----|----|
|----------------------|----|--------|------|-----|----|----|

2.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111

1.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앞에서, 관련 기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 종사자 관련 여건, 종사자 양성제도 및 보수교육,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가 자격강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자격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현재의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개선방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먼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개선안을 제시하겠다.

가.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가정폭력 및 성폭력관련 상담소는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전문 상담을 하고, 의료 및 수사·재판 등의 법률지원을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상담원들이 폭력피해상황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급한 폭력 상황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폭력피해여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며, 폭력피해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연계기관을 발굴·관리하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나.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우리사회에서 폭력관련 상담원 교육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양성기관 마다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교육내용에 관해서도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담원 교육이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서비스의 질에 관한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상담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담원 양성과정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담원들이 주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담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주제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고 있으므로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심리상담 기법 및 심리치료를 위한 지식, 여성 및 인권에 대한 인식, 피해여성들의 자활유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방안이나 연계망 형성을 위한 제반 지식 및 기술, 의사소통 훈련, 집단심리 상담기술, 법률, 의료관련 지식 등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의 교육자료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양성교육이 주제별 교육내용 중 '상담유형별 유의사항'에 집중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상담실습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상담기관에서는 상담실습 기회를 따로 마련하여 상담일지 리뷰, 전화응대 참관, 법률지원에 필요한 조사동행, 재판동행, 진술서 작업 등을 실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양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야별 필수 이수영역을 정하거나 강의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기관별 교육운영에 관한 관리 및 감독체계의 강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참여식 교육방법의 활용

상담원 대상의 교육요구도 조사에서 교육방법으로 강사의 강의 이외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 형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 강사가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1회, 1과목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과정에서 전담과목을 개설하여 보다 심층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수교육시에 부분적으로 워크샵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관 관리자대상의 워크샵 등이 그것이다. 향후에는 양성교육에도 워크샵식 수업을 배분하도록 하여 교육생들의 참여에 의한 수업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위주의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교육훈련기관 선정 관련 법적 근거 제공

현재는 가정폭력 교육훈련시설 설치에 관해서만 법적 근거가 있는데, 성폭력이나 성매매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법적 근거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질적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어떤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을 담당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학교나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하는 방법과 여성폭력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담소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교육전담기관에 설치할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교육전문가와 실제 여성폭력상담을 하고 있는 곳, 관련 단체, 폭력피해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국가공인자격증제도 도입

상담원 요구도 조사에서 수료증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국가공인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지적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상담원 교육자격취득과 관련하여 민간자격으로 할 것인가, 국가자격으로 할 것인가는 전체 자격관련을 위해 마련된 조건과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자격의 취득을 통해 상담원의 자질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2.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가. 자격제도 개편 방향

앞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의 개선을 토대로 자격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먼저 자격제도 신설 및 개선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고, 본 연구진의 자격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자격제도의 신설이나 개선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다시 말하면 사회적 차원에서 서비스 수요가 있는 영역에의 종사자 자격부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종사자에게 인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질의 인력이 해당 분야에 유입되어서 관련 서비스제공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화가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자격제도를 신설하거나 개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조정윤 외, 2010). 자격제도를 통한 직업에서의 전문성확보를 통해 소비자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양질의 종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 자격종목의 특성과 수준을 참고하여 자격의 등급수준을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조정윤 외, 2010).

자격제도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분야에 국가자격을 도입하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전문 직업인의 위상을 확보하여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조정윤 외, 2010). 그 결과,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데, 자격신설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문성 보유에 따른 인증 필요성'을, 그 다음으로 '업무수행 시 필요한 고유 지식·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인지의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였다(박종성 외, 2010). 사회복지분야에서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자격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4%가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으로만 신설'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는데, 사회복지사협회나 단체 종사자들의 경우 이러한 응답이 48.1%로 나타나 국가자격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한 것을 알 수

있다(박종성 외, 201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은 민간자격보다는 국가자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자격부여 방식은 처음부터 개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서비스 제공 초기부터 정부가 종사자 자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나. 자격제도가 지향해야 할 3대 요소

〈표 Ⅵ-1〉자격제도가 지향해야 할 3대 요소

| 3대 요소 | 내용 | | |
|-------|--|--|--|
| 현장성 | - 산업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 | | |
| 활용성 | - 노동시장에서의 활용 - 자격의 신설단계에서부터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정부 등 자격관련 이해당사자간 의 합의(자격의 필요성, 자격의 활용방법과 활용범위 등)가 중요 | | |
| 통합성 | 자격간의 내용과 수준의 일관성을 보장 자격이 어떠한 산업영역 또는 직무영역에 해당되는지 정하는 자격분류체계와 자격소지자의 직무능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수준분류체제가 통합될 필요. 그래야 직무수행능력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격 간에 상호호환이 가능 통합된 기준이 없는 경우,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개인은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중복된 능력개발에 투자 할 가능성이 존재 | | |

자료: 이동임 외(2006), p. 125.

전문가들은 자격제도가 목표로 삼아야 할 3대 요소를 제시하는 데 현장성, 활용성, 통합성이 그것이다(이영현 외, 2002; 이동임 외, 2005). 현장성은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수요 및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활용성은 자격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격의 활용방안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훈련기관, 정부,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이동임 외, 2005). 통합성은 자격들 간의 내용이나 수준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자격의 산업별 직무별 분류체계와 자격소지자의 직무수행 능력 수

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수준 분류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통합을 통해서 직무수행 능력이 일관성을 보이고, 자격 간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통합 기준이 부재한 경우에는 개인이 구비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증복적으로 능력 개발에 투자하게 된다(이동임 외, 2005).

다.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16) 관련기관 상담원 자격은 국가자격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종사자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부터 법으로 규정되었고, 종사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예산과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 왔기 때문이다. 자격제도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종사자 위상을 높여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는 상담소장 등 시설장과 상담원 혹은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직위에 따라서 상이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자격의 등급 차등화를 통해서 자격제도를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현장 종사자들은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이 중요하다고 한다. 일정시간의 양성교육 만으로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아래 표에서는 1급, 2급, 3급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1급과 2급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등급에 따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험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국가자격은 시험을 요구하고 있고, 여성폭력 분야에서도 종사자 자격부여와 관련하여 시험을 통한 검정이 필요하다. 1급 시험에 응시

¹⁶⁾ 본 연구의 자격제도 개선안은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종사자의 개별 자격기준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경력에 따라 종사자 자격을 등급화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안 일 수 있다. 현장 종사자 자문회의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보았는데, 통합자격증은 기존 종사자에게 추가의 교육시간과 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제도와 관련된 초기 작업으로서 통합자격증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진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향후 개별 자격증 등급화나 통합자격증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많은 의견수렴에 기초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할 자격은 현행 상담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기관에서 5년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다. 2급 시험의 경우는 상담원 자격에 2년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한다. 여성폭력 관련 기관의 시설장에게는 1급 자격을 요구할 수 있다.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행 상담원 자격은 3급으로 한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특징은 현행 자격부여 및 양성제도를 토대로 현장 경력을 전문적 자질의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다. 경력을 통해 전문적 자질을 쌓은 사람들에게 시험 검정과정을 거쳐 1급과 2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격검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1급과 2급의 시험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정책담당자, 현장 종사자, 연구자가 함께 논의할 사항이다. 자격제도 개선안은 현재의 자격제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효과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현 양성교육 제도의 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격제도 개선안은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책담당자, 현장 종사자,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Ⅵ-2〉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원 응시자격 |
|----|--|
| 1급 | 성폭력상담원 + 경력 5년 가정폭력상담원 +경력 5년 성매매상담원 + 경력 5년 |
| 2급 | 성폭력상담원 + 경력 2년 가정폭력상담원 +경력 2년 성매매상담원 + 경력 2년 |
| 3급 | 현행 상담원 자격 [개별자격 + 일정 교육이수] |

주: 1. 경력은 해당분야 상담소, 시설,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

^{2. 1}급과 2급은 시험을 통해 자격을 검정을 검정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소정(2005), "정부와 민간가정폭력상담소의 협력관계가 민간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제44집 2호: 135-165.
- 김승권 외(2007),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승권 외(2007),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재엽 외(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현정(2000),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 지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 박종성(2010),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 박종성 외(2010),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I)-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인혜(2008), "가정폭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창립25주년기념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변화순 외(2010), "2010년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보건복 지가족부.
- 신상숙(2007), "한국 반(反)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심영희(1998), "위험사회 | I와 성폭력", 『계간 사상』, 제38 | 3천 1호 |
|--------------------|-----------------------|---------------------------|
| 여성가족부(2008), "2008 | 3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 | 침", 여성가족부. |
| (2009), "2009 | 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 |]침", 여성가족부. |
| (2010), "2010 |)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 |]침", 여성가족부. |
| (2011), "2011 | l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 | 운영지침", 여성가 족 투 |

이동임 외(2006), "지식정보화시대의 신자격제도 구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8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 이미정(2000), "여성관련 상담소의 서비스 증진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미정 외(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봉주(2009),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에 과한 고찰", 『사회복지사 전문화 방안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 이원숙(1997), "국내외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 과정",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 향 및 지원체계』, 한국성폭력연구소.
- 전길량 외(2006),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조정윤 외(2010),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의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9), "사회복지사 전문화 방안을 위한 자격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_____(20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 해외문헌

- Breckenridge, J. 1992. "An Exotic Phenomenon? Incest and Child Rape" in Crimes of Violence: Australian Responses to Rape and Child Sexual Assault, Breckenridge, J and Moira Carmody Sydney: Allen & Unwin.
- Carmody. 1992. "Uniting All Women" In Crimes of Violence: Australian Responses to Rape and Child Sexual Assault, Breckenridge, J and Moira Carmody, eds, Sydney: Allen & Unwin.
- Jung, Kyungja. 2002. Constitution and Maintenance of Feminist Practice: Comparative Case Study of Sexual Assault Centres in Australia and Korea,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Martin, Patricia Yancey. 1990. "Rethinking Feminist Organizations," Gender & Society, 4: 182-206.
- Matthews, Nancy A. 1994. Confronting Rape: The Feminist Anti-Rape Movement and the Stat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uller, Carol. 1995. "The Organizational Basis of Conflict in Contemporary Feminism," In Ferree and Martin (eds). Feminist Organization: Harvest of the

New Feminist Mov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Tissot, Phipoppe. 2004. Terminology of vocational training Policy. jA multilingual golssary for and enlarged Europe, Cedefop.

Wilson, Elizabeth. 1977. Women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Tavistock.

Abstract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s of Service Workers in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 Mijeong Lee Deuk-Kyoung Yoon Hwa-Soon Byun

With the enactment of laws to combat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in Korea, the government funding has been allocated to run institutions that provide support to the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number of those institutions and workers providing such service has gone up accordingly. The regulation on the qualifications of service workers in those institutions and their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 are critical when it comes to controlling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by such organizations. But little has changed on this front despite institutional improvements made regarding the provision of aid for the victims. Those working in women violence victim support agencies face poorer working conditions compared to those in othe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hich has been a major cause for a higher turnover in and, subsequently, undermining the status of these institutions as special agencies for providing support to women violence victims. Against this backdrop, discussions 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qualifications of service workers in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for women violence victims are required. This study reviews the overall status of these victim support agencies and examines staff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various social service areas as reference. In addition to the qualifications review,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in continuing education provided to those workers in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for women violence victims, and presents improvement plans. This paper suggests that staffing in those women violence victim support agencies should be done through a newly-created national certificate program; first, the certificate should be graded based on the applicant's work experience, which means onlythose that meet the applicant eligibility criteria can take the certificate test in their respective grades. While a written test for Grade 1 and 2 is recommended, those who have been given the qualifications after receiving mandatory education/train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ased on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are classified into Grade 3. Since this study is an initial analysis, our conclusion is that more discussions and studies are necessary to explore and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service workers in women violence victim support agencies in Korea.

2011 연구보고서(수시과제)-7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2011년 9월 15일 인쇄 2011년 9월 17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代)

ISBN 978-89-8491-408-7 93330

<정가 9,000원>